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 의 장



제1495호
2019년 9월 27일
금요일

조 레

○ 조	레 제 1638 호	기금 존속기한 정비 및 연장을 위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3
○ 조	레 제 1639 호	남동구체육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6
○ 조	레 제 1640 호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2
○ 조	레 제 1641 호	남동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16
○ 조	레 제 1642 호	남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
○ 조	레 제 1643 호	남동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24
○ 조	레 제 1644 호	남동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	31
○ 조	레 제 1645 호	남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7
○ 조	레 제 1646 호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45

공 고

○ 공	고 제 1671 호	상세주소 부여 기초조사 결과 통보 공시송달 공고 의뢰	48
○ 공	고 제 1677 호	남동구 견인보관소 내 장기 미 반환 차량 자진 인수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61
○ 공	고 제 1687 호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63
○ 공	고 제 1695 호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자동차(이륜차 포함) 공시송달 공고	74
○ 공	고 제 1700 호	2019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76
○ 공	고 제 1704 호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77
○ 공	고 제 1705 호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79
○ 공	고 제 1706 호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간석성락아파트 재개발 정비 구역 어린이공원) 입안을 위한 공고·열람	81
○ 의회사무국공고 제 117 호		「남동구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82
○ 의회사무국공고 제 118 호		「남동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97

고 시

○ 고	시 제 117 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109
○ 고	시 제 118 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돌산마루1호 공영주차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10
○ 고	시 제 119 호	도로명주소 고시공고 및 게재	112
○ 고	시 제 120 호	상세주소 직권부여 고시	116
○ 고	시 제 121 호	도시계획시설【녹지: 소래구역 완충녹지1, 2, 3】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286
○ 고	시 제 122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도림2지구 소3-7호선】사업 실시 계획(변경) 고시	288
○ 고	시 제 123 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공공공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312
○ 고	시 제 124 호	도시관리계획(만수3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314
○ 고	시 제 125 호	도시관리계획(소래논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335
○ 보 건 소 고 시 제 2 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365

회 람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 홍보미디어실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기금 존속기한 정비 및 연장을 위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9월 27일

남동구 조례 제1638호

기금 존속기한 정비 및 연장을 위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남동구 재정운영 조례」의 개정)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통합기금의 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2조(「남동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동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조(「남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남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1268호 남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전단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조(「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1328호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3조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자치단체 재량으로 설치한 기금은 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하여야 하며, 존속기한 만료 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토록 되어 있는 바, 존속기한 미설정기금 및 존속기한 만료예정(2019.12.31.)인 기금들에 대한 존속기한 조례정비를 통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등 조례 4건
 - 기금 존속기한 정비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체육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9월 27일

남동구 조례 제1639호

남동구체육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체육회를 설립하여 체육운동을 범시민화하고 우수한 경기자를 양성하여 남동구 체육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남동구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체육회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설립) 체육회는 법인으로 설립한다.

제5조(대상사업) 체육회는 체육진흥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체육회에 가맹된 체육단체와 생활체육종목단체 등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 체육대회 개최와 국내외 교류
3. 대한체육회가 개최하는 체육대회의 참가
4.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지역 전문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5. 체육인의 복지 향상
6.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8.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사 연구
9. 학교체육, 전문체육, 생활체육의 진흥 및 연계사업
10. 구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11. 체육 역사 발굴, 확산 등 체육문화사업
12.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수익사업) 체육회는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제7조(정관) ① 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정관을 정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 관련 규정
5. 회장 및 부회장 선출 규정
6. 이사, 감사의 임면 및 이사회, 총회 관련 규정

7. 임원 및 직원 관련 규정
8. 사업 수행 규정
9. 정관 변경 규정
10. 그 밖에 체육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체육회가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기본재산) ①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고 체육회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확보하고 기본 재산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현물
3. 그 밖의 현물

제9조(기금) ①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하되, 관리 등 세부사항은 체육회가 따로 정한다.

②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구의 출연금
2. 기부금
3. 제6조의 사업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등

③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기본재산 운용 수입금

2. 기부금

3. 그 밖의 수입금 등

제10조(기금의 용도) ①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체육회 운영비

2. 제4조에서 규정한 대상사업 지원

3. 그 밖에 체육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목적 외에 사용 할 수 없다.

제11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회 설립비용 및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2조(임원) ① 체육회는 회장과 부회장, 감사와 이사를 두며, 임원은 비상근 직으로 체육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 계 인사로 한다.

② 회장은 정관에 따라 선출하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제13조(이사회) 이사회는 회장과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며 정관에 따라 운영한다.

제14조(사무국) ① 체육회는 관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은 상근직으로 한다.

② 체육회 사무국 직원 임면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등) ① 회장은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체육회를 대표하고 사무국장은 체육회의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16조(사업연도) 체육회의 사업연도는 구의 일반회계 연도에 따른다.

제1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체육회는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에

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체육회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사무의 위임 등) 구청장은 체육진흥과 체육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남동구 사무의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운동경기부 및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체육회에 위임하거나 위탁 할 수 있다.

제19조(운영규정) 체육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남동구체육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체육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② 체육회가 제4조에 따라 법인으로 설립한 때에는 체육회의 모든 권리·의무·재산을 포괄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2020년 1월 16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금지’가 시행됨에 따라 남동구체육회를 법인으로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토대를 마련하여 남동구 체육진흥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제1조 ~ 제3조)
- 체육회 설립, 사업범위에 관한 사항 (제4조 ~ 제6조)
- 체육회 정관 및 재정에 관한 사항 (제7조 ~ 제11조)
- 체육회 임원 및 사무국에 관한 사항 (제12조 ~ 제15조)
- 체육사무 위임에 관한 사항 (제18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9월 27일

남동구 조례 제1640호

남동구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축구발전에 기여하고 구민의 여가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된 남동구민축구단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동구민축구단(이하 “구민축구단”이라 한다)”이란 지역의 구민, 단체, 기업 등이 중심이 되어 설립되고 남동구와 연고지 협약을 한 축구단을 말한다.
2. “경기장”이란 「남동구 공원운동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운동장을 말한다.

제3조(구민축구단 육성)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축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급 기관·단체 등에게 지원을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축구단의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축구 교류 활성화를 위한 대회 개최 및 리그 참가
2. 지역 축구 발전을 위한 훈련 및 유소년 축구단 운영
3. 그 밖에 구민축구단 운영 및 육성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조(사용료 감면) 구청장은 구민축구단의 경기장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구민축구단 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 유소년축구단을 운영하는 경우
3. 국제축구교류 및 지역축구 발전을 위한 축구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민축구단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경기장의 우선사용) 구청장은 구민축구단에게 경기장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제대회 등으로 경기장 사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다른 경기장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보고 및 검사 등) 구청장은 제3조제2항 및 제4조의 지원 사업에 대하여 구민축구단에게 사업수행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지역 축구발전에 기여하고 구민의 여가 선용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남동구민축구단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남동구민축구단 육성·지원을 위한 목적을 규정 (제1조)
- 남동구민축구단 용어 정의 (제2조)
- 남동구민축구단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
- 남동구민축구단의 사용료 감면(제4조)
- 남동구민축구단의 경기장 우선 사용(제5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9월 27일

남동구 조례 제1641호

남동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는 업체를 홍보 및 지원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우수업체 지정 및 해지) 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업체를 환경우수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우수업체 중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지정을 해지하여야 한다.

제5조(우수업체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업체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우수업체를 홍보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과 홍보) 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환경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민간위탁) ① 구청장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민간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민간단체, 공익법인(이하 “민간단체 등”이라 한다)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 따라 민간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포상)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과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는 업체를 홍보 지원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제1조~제3조)
- 우수업체 지정 및 해지에 관한 사항 (제4조)
- 우수업체 지원 및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제5조~제6조)
- 1회용품 사용저감 교육 홍보사업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제7조)
- 1회용품 사용저감 우수자 포상에 관한 사항 (제8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9월 27일

남동구 조례 제1642호

남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지방공기업”을 “도시관리공단”으로 한다.

제3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4조 중 “지방공기업의 장은 제2조제2항”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제2조제

2호”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지방공기업의 장 에게”를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지방공기업의 장”을 “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가”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지방공기업의 장”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지방공기업의 장”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 한다.

제7조 단서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는”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제8조 중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를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로 한다.

제9조 중 “방법에 관하여는 해당 기관의 재산관리 규정에”를 “방법은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매점 및 자동 판매기 등의 우선 계약 순위 (제2조 및 제6조 관련)					
순위	장 애 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70세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미과세대상자	65세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이외의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이외의 사람	부자가정 또는 모자가정
3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4					55세이상인 사람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장애등급제 개편사항을 포함한 「장애인복지법」이 일부 개정·시행(2019. 7. 1.시행)됨에 따라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지자체의 서비스기준의 개정이 필요하므로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여 장애인들의 권익을 보장하고 행정수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신청자격 ‘장애등급 2급이상’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변경(제5조)
-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우선계약 순위[별표] 일부내용조정(제6조)
- 위탁운영가능한 장애인 “장애등급 2급이상”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변경(제7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9월 27일

남동구 조례 제1643호

남동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동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동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남동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기능)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설치한 남동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고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청소년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의 참여 및 의견 제안
2.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교류활동
3.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 제안

제3조(참여위원회의 구성) ① 참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참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참여위원회의 위원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중에서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거나 학교장 추천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조례」를 따른다.

제4조(참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참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참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경우
2. 회의 참석 외 활동 참가율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3. 범죄를 저지르거나 위원회의 동의 없이 참여위원회 명의로 정치활동을 하는 등 참여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참여위원회의 운영) 참여위원회의 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 구청장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분과위원회: 기획
2. 제2분과위원회: 문화
3. 제3분과위원회: 교육·홍보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참여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8조(보상)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남동구의 명예를 드높인 위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문화탐방·청소년 국제교류 등에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9조(청소년육성위원회의 기능) 법 제11조에 따라 설치하는 남동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육성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주요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주요 시행계획의 평가 및 제도개선

6. 다른 조례에서 육성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7. 그 밖에 청소년육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육성위원회의 구성) ① 육성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육성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육성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육성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남동구의회 의원

나.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의 추천이 있는 사람

다.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

라.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

마. 그 밖에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조례」를 따른다.

제11조(육성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

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남동구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할 지역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경찰관서의 장, 학교장 또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② 법 제2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제13조(지도위원의 구성) 지도위원은 해당 동(洞)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 위치, 그 밖의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동별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14조(지도위원의 임무)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보호·선도 및 건전생활 지도

2. 청소년수련활동의 여건 조성 및 지원

3. 청소년단체 육성 및 활동 지원

4.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 유익 환경 조성

5. 청소년보호 위반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

6.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가정 지원

제15조(지도위원의 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지도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지도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지도위원 임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2.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지도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지도위원의 증표 발급) ①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증표의 규격 등의 사항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참여위원회 및 육성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 제4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청소년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를 정비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청소년참여위원회에 대한 규정(제2조 ~ 제8조)
- 청소년육성위원회에 대한 규정(제9조 ~ 제11조)
- 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한 규정(제12조 ~ 제17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
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9월 27일

남동구 조례 제1644호

남동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안전취약주택”이란 남동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3층 이상인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나목에 따른 다중주택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

바.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2. “피난구조설비”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완강기

나. 지지대

다. 표지판

제3조(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지원계
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사업의 운영 계획
2.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원 사업의 추진시기 및 절차
4. 화재안전취약주택 기초조사
5. 교육·홍보·신청 방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대상)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은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재안전취약
주택으로 한정한다.

제5조(지원신청)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소유자 또는 거주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설치비용 지원) ①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비

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피난구조설비를 설치하려는 사람은 설치비의 10퍼센트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제외한다.

제7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위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전문업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동구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1.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원계획의 변경 사항
3. 지원대상 적격 여부 및 최종 지원대상 결정 여부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화재안전취약주택 관련 부서장
2. 인천남동소방서 재난관리 관련 부서장
3. 인천공단소방서 재난관리 관련 부서장
4. 남동구의회 의원 1명

5. 소방기술사

6. 건축사 또는 건축시공기술사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교육) ① 구청장은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받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소유자 및 거주자에게 설치 시 사용방법 등을 교육하여야 하며, 해당 소유자 및 거주자는 사용실습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교육 프로그램 개설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책임) ① 구청장은 2년마다 피난구조설비 설치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②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받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소유자 및 거주자는 피난구조설비의 유지·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환수규정)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소유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받은 피난구조설비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신청서						
지 원 대 상 자	성 명		생년월일		세대원수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종류	주거형태	층 수	설치위치	담당공무원 확 인 란	
		☐ 단독주택 (단독, 다중) ☐ 다세대주택 ☐ 다가구주택 ☐ 연립주택 ☐ 기타	☐ 3층 ☐ 4층 ☐ 5층 ☐ 6층 ☐ 7층 이상 (층)	☐ 베란다 ☐ 복 도 ☐ 기타 ()		
설치지원내용 세부 설명						
설치시기		년 월 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위와 같이 피난구조설비의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남동구청장 귀하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화재에 취약한 주거지의 예상치 못한 화재 발생시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피난구조설비 설치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제1조 및 제2조)
-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
- 지원대상, 지원신청 및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 ~ 제6조)
-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제7조)
-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제8조 및 제9조)
- 피난구조설비 지원대상자 교육에 관한 사항 (제10조)
- 관리책임 및 환수규정에 관한 사항 (제11조 및 제12조)

조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9월 27일

남동구 조례 제1645호

남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시재생 커뮤니티센터
2.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보안·방범시설, 독거노인 및 여성·노약자응급 안전 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주민 운동 시설, 독서실, 자전거 이용대, 무인택배 수취함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시설, 재활용품 수거 시설 등 마을의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5. 공동 임대상가, 공동 판매장, 공동 회의실, 공방, 공동 텃밭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6.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도시재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3조(도시재생위원회)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심의나 자문을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남동구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영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공무원은 예산, 도시, 건설, 건축 및 안전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조례」를 따른다.

제4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 후단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의 조직과 분장업무에 관한 사항은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로 정한다.

제5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후단 및 영 제

14조제2항에 따라 남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 관련 주민제안사업 사전검토
2. 제7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지원 및 주민 갈등 조정
3. 도시재생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지원 및 그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홍보 및 기록관리
6.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업무

제7조(주민협의체) 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

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재생대학 운영 및 도시재생 우수지역 견학 등 주민역량 강화
2. 주민의 적극적인 도시재생사업 참여를 위한 주민협의체 활동 지원
3. 그 밖에 주민협의체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남동구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2.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
3.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 형성
4.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견과 갈등의 조정

③ 협의회는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④ 협의회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2.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도시재생사업 관계자
3. 시민단체 대표
4.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 및 행정기관 공무원

⑤ 그 밖에 협의회는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조례」를 따른다.

제9조(총괄계획가 및 마을활동가)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의 원활한 추진을 위

하여 도시재생 분야에 다양한 경험과 학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총괄계획가 및 마을활동가를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

② 총괄계획가 및 마을활동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자문
2. 도시재생사업 관련 주민의견 청취
3. 도시재생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상호 협조

③ 구청장은 총괄계획가 및 마을활동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도시재생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보조의 대상이 되는 사업과 그 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계획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공동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의2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2. 주민의 건강, 안전 및 이익 보장
3.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
4.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

민의 삶의 질 향상

5.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목적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2. 제8조에 따른 협의회
3. 구청장이 정하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4.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기업

제12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건폐율 이내

$$\text{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times [1 + (\text{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시가지 도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②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주차장 설치 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공동이용시설의 종류(제2조)
- 도시재생위원회 구성(제3조)
-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제4조)
-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업무(제5조, 제6조)
- 주민협의체의 설립(제7조)
-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8조)
- 총괄계획가 및 마을활동가 운영(제9조)
- 도시재생사업 지원(제10조)
-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의 감면(제11조)
-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제12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19년 9월 27일

남동구 조례 제1646호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공공행사 등 그 밖에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00퍼센트 이하 감면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생활주택 포함, 기숙사는 제외), 오피스텔 중 하
나의 용도를 포함하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기계식주차장으로 설치할 경
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기계식주차장은 최소 20대 이상 주차가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기계식주차장은 법정주차대수의 20퍼센트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공공시설 등의 주차장 사용료 징수 및 운영 관리) ① 구청 및 소
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과 구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주차장
으로서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주차장의 이용에 대하여 제
4조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주차요금, 이용시간, 이용대상 차량, 그 밖에 주차장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자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았거나, 건축심의·
건축허가·건축신고 등(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신청 중인 건축물, 건축허
가(건축신고, 용도변경 및 설계변경을 포함한다)를 받아 건축 중인 건축물
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2019.8.23. 구청장으로부터 제출 및 접수되어 같은 날 사회도시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위원회 심의 중 추가 개정사항 도출에 따라 위원회 제안으로 대안을 발의하는 사항으로 실효성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구민편익을 증대하고자 함.
- 소래포구 축제 등 공공행사 개최 시 행사장 운영, 방문객 교통편의 제공과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무료개방 필요성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 근거 마련
-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포함) 및 오피스텔의 거주자 및 이용자가 기계식주차장 이용기피 및 고장 등 관리소홀로 구도심 주차난 유발
- 소규모 기계식 주차장의 난립 제한을 위한 설치기준 강화
- 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주차장의 일반 이용객 제공에 따른 사용료 징수 및 운영·관리 근거 마련

□ 주요내용

- 공공행사 등 그 밖에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공영주차장 감면에 대한 근거 신설 (제5조제11호)
-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주택법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포함, 기숙사는 제외) 오피스텔을 포함하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기계식주차장으로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제한 (제18조의2)
- 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주차장 사용료 징수 및 운영·관리에 대한 근거 신설 (제19조의2)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9-1671호

공 시 송 달 공 고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4 제3항에 의거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위하여 ‘상세주소 부여 기초조사 결과 통보서’를 건물 임차인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 고 명: 상세주소 부여 기초조사 결과 통보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19. 9. 23. ~ 2019. 10. 8. (15일간)
3.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내역 따로붙임’
5.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의거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별도의 의견이 없을 시 절차에 의해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남동구청 도로명주소팀(☎032-453-247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 9. 23.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공 시 송 달 조 서

연번	구분	성명	통보대상자 주소	상세주소 부여대상 건물	통보 내용	사유
1	임차인	남*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판로64번길 62-1, 1층 (만수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판로64번길 62-1 (만수동)	201 101, 102 101, 102	폐 문부재
2	임차인	주*형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판로64번길 62-1, 101호 (만수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판로64번길 62-1 (만수동)	201 101, 102 101, 102	폐 문부재
3	임차인	김*식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판로64번길 62 (만수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판로64번길 62 (만수동)	201 101 101, 102	수취인불명
4	임차인	김*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898번길 53-6, 104호 (간석동, 세종원룸)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898번길 53-6 (간석동)	301, 302 201, 202, 203, 204 101, 102, 103, 104 101, 102, 103, 104	폐 문부재
5	임차인	손*옥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898번길 53-6, B01호 (간석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898번길 53-6 (간석동)	301, 302 201, 202, 203, 204 101, 102, 103, 104 101, 102, 103, 104	수취인불명
6	임차인	이*현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898번길 53-6, B04호 (간석동, 세종원룸)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898번길 53-6 (간석동)	301, 302 201, 202, 203, 204 101, 102, 103, 104 101, 102, 103, 104	폐 문부재
7	임차인	차*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898번길 53-6, 201호 (간석동, 세종원룸)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898번길 53-6 (간석동)	301, 302 201, 202, 203, 204 101, 102, 103, 104 101, 102, 103, 104	폐 문부재

8	임차인	홍*진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898번길 53-6, 103호 (간석동, 세종원룸)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898번길 53-6 (간석동)	301, 302 201, 202, 203, 204 101, 102, 103, 104 101, 102, 103, 104	폐 문부재
9	소유자	김*혜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현로136번길 35 (만수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 192 (간석동)	501 401, 402, 403, 404, 405, 4 06 301, 302, 303, 304, 305, 3 06 201, 202, 203, 204, 205, 2 06 101, 102, 103	이사불명
10	임차인	김*훈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 192, 304호 (간석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 192 (간석동)	501 401, 402, 403, 404, 405, 4 06 301, 302, 303, 304, 305, 3 06 201, 202, 203, 204, 205, 2 06 101, 102, 103	폐 문부재
11	소유자	유*환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근동 314번지 벽산아파트 101동 100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 192-3 (간석동)	401, 402, 403, 404 301, 302, 303, 304, 305 201, 202, 203, 204, 205 101, 102, 103, 104, 105	수취인불명
12	임차인	신*석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 192-3, 303호 (간석동, 미림주택)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 192-3 (간석동)	401, 402, 403, 404 301, 302, 303, 304, 305 201, 202, 203, 204, 205 101, 102, 103, 104, 105	폐 문부재
13	임차인	황*진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 192-3, 205호 (간석동, 미림주택)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 192-3 (간석동)	401, 402, 403, 404 301, 302, 303, 304, 305 201, 202, 203, 204, 205 101, 102, 103, 104, 105	폐 문부재
14	소유자	나*숙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303-19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25번길 12-1 (간석동)	301 201 101, 102	폐 문부재

15	임차인	강*진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26번길 7, 304호 (간석동, 신비주택)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26번길 7 (간석동)	401, 402, 403, 404, 405 301,302,303,304,305 201,202,203,204,205 101,102	폐 문부재
16	임차인	김*슬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26번길 7, 205호 (간석동, 신비주택)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26번길 7 (간석동)	401, 402, 403, 404, 405 301,302,303,304,305 201,202,203,204,205 101,102	수취인불명
17	임차인	김*영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26번길 7, 403호 (간석동, 신비주택)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26번길 7 (간석동)	401, 402, 403, 404, 405 301,302,303,304,305 201,202,203,204,205 101,102	폐 문부재
18	임차인	송*옥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26번길 7, 102호 (간석동, 신비주택)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26번길 7 (간석동)	401, 402, 403, 404, 405 301,302,303,304,305 201,202,203,204,205 101,102	폐 문부재
19	임차인	양*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26번길 7, 405호 (간석동, 신비주택)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26번길 7 (간석동)	401, 402, 403, 404, 405 301,302,303,304,305 201,202,203,204,205 101,102	수취인불명
20	임차인	전*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26번길 7, 102호 (간석동, 신비주택)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26번길 7 (간석동)	401, 402, 403, 404, 405 301,302,303,304,305 201,202,203,204,205 101,102	폐 문부재
21	임차인	정*미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26번길 7, 201호 (간석동, 신비주택)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26번길 7 (간석동)	401, 402, 403, 404, 405 301,302,303,304,305 201,202,203,204,205 101,102	폐 문부재
22	임차인	이*임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72번길 45-10 (간석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72번길 45-10 (간석동)	201 101,102	수취인불명

23	임차인	문*환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205번길 31-2, 101호 (간석동, 태경주택)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205번길 31-2 (간석동)	301, 302 201,202 101,102	수취인불명
24	소유자	임*선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254 주공아파트 9동 50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풀무로26번길 3 (간석동)	301, 302, 303 201,202,203,204,205,2 06 101,102,103,104 101,102,103,104	이사불명
25	소유자	방*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764번길 17 (간석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764번길 17 (간석동)	201 101 101,102	주소불명
26	소유자	이*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764번길 17 (간석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764번길 17 (간석동)	201 101 101,102	주소불명
27	임차인	손*수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764번길 17 (간석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764번길 17 (간석동)	201 101 101,102	주소불명
28	임차인	배*희	인천광역시 남동구 양지로6번길 12, 302호 (간석동, 용주빌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양지로6번길 12 (간석동)	401 301,302,303 201,202,203 101,102,103	수취인불명
29	임차인	박*식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653번길 37, 201호 (간석동, 건우원룸)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653번길 37 (간석동)	301, 302, 303, 304 201,202,203,204 101,102,103,104 101,102,103,104	주소불명
30	임차인	이*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653번길 37, B01호 (간석동, 동암타워)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653번길 37 (간석동)	301, 302, 303, 304 201,202,203,204 101,102,103,104 101,102,103,104	폐 문부재
31	임차인	최*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653번길 37, 504호 (간석동, 한울빌라)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653번길 37 (간석동)	301, 302, 303, 304 201,202,203,204 101,102,103,104 101,102,103,104	주소불명

32	임차인	최*영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653번길 37, 104호 (간석동, 동암타워)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653번길 37 (간석동)	301, 302, 303, 304 201, 202, 203, 204 101, 102, 103, 104 101, 102, 103, 104	폐 문부재
33	임차인	김*애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653번길 50, 1층동 (간석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653번길 50 (간석동)	201 101, 102 101, 102	폐 문부재
34	임차인	최*욱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653번길 50, 101호 (간석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653번길 50 (간석동)	201 101, 102 101, 102	폐 문부재
35	임차인	조*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131번길 51, 202호 (간석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131번길 51 (간석동)	301, 302 201, 202, 203, 204 101, 102, 103, 104	폐 문부재
36	소유자	김*순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1-57 송현아파트 6동 30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암남로26번길 45 (간석동)	301 201, 202, 203, 204, 205 101, 102, 103	주소불명
37	임차인	김*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406번길 21, 105호 (간석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406번길 21 (간석동)	301 201, 202, 203, 204, 205, 2 06 101, 102, 103, 104, 105, 1 06	수취인불명
38	임차인	신*희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406번길 21, 지층 106호 (간석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406번길 21 (간석동)	301 201, 202, 203, 204, 205, 2 06 101, 102, 103, 104, 105, 1 06	폐 문부재
39	소유자	전*순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223번길 28, 105동 2202호(석남동, 금호어울림아 파트)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169번길 33-5 (간석동)	301 201, 202, 203, 204 101, 102, 103, 104 101, 102, 103, 104	폐 문부재
40	소유자	안*숙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촌로14번길 11-3 (간석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촌로14번길 11-3 (간석동)	301 201, 202 101, 102 101, 102	주소불명

41	임차인	정*수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촌로14번길 11-3, 101호 (간석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촌로14번길 11-3 (간석동)	301 201, 202 101, 102 101, 102	폐 문부재
42	소유자	용*중	인천 남구 주안동 1290-23 인흥빌라 2동 10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촌로20번길 53 (간석동)	401, 402, 403 301, 302, 303, 304, 305 201, 202, 203, 204, 205 101, 102, 103, 104, 105	수취인불명
43	임차인	오*희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촌로20번길 53, 305호 (간석동, 광우주택)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촌로20번길 53 (간석동)	401, 402, 403 301, 302, 303, 304, 305 201, 202, 203, 204, 205 101, 102, 103, 104, 105	폐 문부재
44	임차인	윤*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촌로20번길 53, 305호 (간석동, 광우주택)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촌로20번길 53 (간석동)	401, 402, 403 301, 302, 303, 304, 305 201, 202, 203, 204, 205 101, 102, 103, 104, 105	폐 문부재
45	임차인	한*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촌로20번길 53, 103호 (간석동, 광우주택)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촌로20번길 53 (간석동)	401, 402, 403 301, 302, 303, 304, 305 201, 202, 203, 204, 205 101, 102, 103, 104, 105	폐 문부재
46	임차인	박*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촌로36번길 26 (간석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촌로36번길 26 (간석동)	201 101 101	폐 문부재
47	임차인	최*순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촌로36번길 26, B01호 (간석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촌로36번길 26 (간석동)	201 101 101	폐 문부재
48	소유자	김*수	인천광역시 남구 송의동 58-41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촌로36번길 32 (간석동)	401, 402, 403 301, 302, 303, 304 201, 202, 203, 204 101, 102, 103, 104	수취인불명

49	임차인	권*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촌로36번길 32, 302호 (간석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촌로36번길 32 (간석동)	401, 402, 403 301,302,303,304 201,202,203,204 101,102,103,104	수취인불명
50	임차인	김*식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촌로36번길 32, 401호 (간석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촌로36번길 32 (간석동)	401, 402, 403 301,302,303,304 201,202,203,204 101,102,103,104	폐 문부재
51	임차인	박*혁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촌로36번길 32, 302호 (간석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촌로36번길 32 (간석동)	401, 402, 403 301,302,303,304 201,202,203,204 101,102,103,104	폐 문부재
52	임차인	박*기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촌로36번길 32, 403호 (간석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촌로36번길 32 (간석동)	401, 402, 403 301,302,303,304 201,202,203,204 101,102,103,104	폐 문부재
53	임차인	최*선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촌로36번길 32, 302호 (간석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촌로36번길 32 (간석동)	401, 402, 403 301,302,303,304 201,202,203,204 101,102,103,104	수취인불명
54	임차인	양*윤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촌로36번길 42, 104호 (간석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촌로36번길 42 (간석동)	301, 302, 303, 304 201,202,203,204 101,102,103,104 101,102,103,104	폐 문부재
55	임차인	이*준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촌로36번길 42, 302호 (간석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촌로36번길 42 (간석동)	301, 302, 303, 304 201,202,203,204 101,102,103,104 101,102,103,104	폐 문부재

56	소유자	신*영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산37-4 현대아파트 312동 804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촌로36번길 46 (간석동)	401, 402, 403, 404 301,302,303,304 201,202,203,204 101,102,103,104	폐 문부재
57	임차인	최*무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촌로36번길 46, 301호 (간석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촌로36번길 46 (간석동)	401, 402, 403, 404 301,302,303,304 201,202,203,204 101,102,103,104	폐 문부재
58	임차인	김*현	인천광역시 남동구 이화로40번길 12 (간석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이화로40번길 12 (간석동)	501, 502, 503, 504 301,302,303,304 201,202,203,204 101,102,103,104	주소불명
59	임차인	서*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촌로36번길 50, B01호 (간석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촌로36번길 50 (간석동)	301 201,202 101,102	수취인불명
60	임차인	윤*순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599번길 39, 3층 (간석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599번길 39 (간석동)	301 201,202 101,102,103	수취인불명
61	임차인	정*기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364, 지층동 (간석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364 (간석동)	301 201 101,102 101,102	수취인불명
62	임차인	최*선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364 (간석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364 (간석동)	301 201 101,102 101,102	폐 문부재
63	임차인	최*화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364, 101호 (간석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364 (간석동)	301 201 101,102 101,102	폐 문부재

64	소유자	고*숙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328-6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362번길 13-5 (간석동)	301, 302 201,202 101,102	이사불명
65	임차인	김*순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362번길 13-5, 101호 (간석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362번길 13-5 (간석동)	301, 302 201,202 101,102	수취인불명
66	임차인	황*종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362번길 13-5, 102호 (간석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362번길 13-5 (간석동)	301, 302 201,202 101,102	폐 문부재
67	소유자	안*철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53-34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360번길 19-10 (간석동)	301 201,202 101,102	주소불명
68	임차인	김*숙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360번길 19-10, 201호 (간석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360번길 19-10 (간석동)	301 201,202 101,102	폐 문부재
69	임차인	성*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360번길 19-10 (간석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360번길 19-10 (간석동)	301 201,202 101,102	주소불명
70	임차인	오*아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360번길 19-10, 101호 (간석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360번길 19-10 (간석동)	301 201,202 101,102	폐 문부재
71	임차인	제*순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360번길 19-10 (간석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360번길 19-10 (간석동)	301 201,202 101,102	주소불명
72	소유자	유*종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643 신도림1차동아아파트 110-2201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362번길 13-12 (간석동)	401 301,302,303,304 201,202,203,204 101,102,103,104	기타(보관기간 경과후 반송(불요))

73	임차인	신*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362번길 13-12, 101호 (간석동, 세종원룸)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362번길 13-12 (간석동)	401 301,302,303,304 201,202,203,204 101,102,103,104	폐 문부재
74	임차인	장*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362번길 13-12, 204호 (간석동, 세종원룸)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362번길 13-12 (간석동)	401 301,302,303,304 201,202,203,204 101,102,103,104	폐 문부재
75	임차인	정*환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362번길 13-12, 104호 (간석동, 세종원룸)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362번길 13-12 (간석동)	401 301,302,303,304 201,202,203,204 101,102,103,104	폐 문부재
76	임차인	차*기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362번길 13-12, 103호 (간석동, 세종원룸)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362번길 13-12 (간석동)	401 301,302,303,304 201,202,203,204 101,102,103,104	수취인불명
77	소유자	송*경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29길 37-7 (동선동5가,2층)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11번길 4 (간석동)	301, 302 201,202 101,102,103	기타(보관기일경과후반송)
78	소유자	엄*숙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성주로 226,1동1008호(부천아파트)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330번길 45 (간석동)	301, 302 201,202,203,204 101,102,103,104 101,102,103,104	수취인불명
79	임차인	조*곤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330번길 45, 202호 (간석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330번길 45 (간석동)	301, 302 201,202,203,204 101,102,103,104 101,102,103,104	수취인불명
80	소유자	최*희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89, 107동 401호(신흥동,주공아파트)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330번길 51 (간석동)	201 101,102 101,102	이사불명

81	소유자	정*진	인천광역시 부평구 배곶남로6번길 22(십정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12번길 8 (간석동)	301, 302, 303 201,202,203,204 101,102,103,104 101,102,103,104	이사불명
82	소유자	권*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225번길 5-27 (논현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330번길 57 (간석동)	201 101,102 101,102	폐 문부재
83	임차인	박*수	인천광역시 남동구 이화로29번길 14, B02호 (간석동, 태양원룸)	인천광역시 남동구 이화로29번길 14 (간석동)	301 201,202,203,204 101,102,103,104 101,102,103,104	폐 문부재
84	소유자	하*구	서울시 송파구 송이로19길 8, 101동 305호(가락6차현대아파트)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 47 (간석동)	201 101	수취인불명
85	임차인	이*민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 47, 2층호 (간석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 47 (간석동)	201 101	폐 문부재
86	임차인	정*희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 47, 101호 (간석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 47 (간석동)	201 101	폐 문부재
87	임차인	정*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 47, 2층호 (간석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 47 (간석동)	201 101	폐 문부재
88	소유자	김*봉	인천 남동구 간석동 45-8 동원아파트 101-503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41번길 10-16 (간석동)	301 201 101 101,102	수취인불명
89	임차인	안*종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41번길 10-16, 2층 (간석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41번길 10-16 (간석동)	301 201 101 101,102	폐 문부재

90	임차인	안*준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41번길 10-19, 가동 B404호 (우정에이스빌)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41번길 10-19 (간석동)	301, 302, 303, 304 201,202,203,204 101,102,103,104 101,102,103,104	주소불명
91	임차인	김*광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55번길 10, 402호 (간석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55번길 10 (간석동)	301 201,202,203 101,102,103 101,102,103	수취인불명
92	임차인	이*진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205번길 30-6, 303호 (논현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205번길 30-6 (논현동)	401, 402, 403 301,302,303,304,305,3 06 201,202,203,204,205,2 06	수취인부재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9-1677호

불법 주정차 피견인 장기 미반환차량 인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불법 주·정차로 인해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에 의거 단속 및 견인되어 남동구 견인차량보관소에 1개월 이상 장기 보관중인 차량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차량 소유주에게 차량 인수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 9. 23.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공 고 명 : 남동구 견인보관소 내 장기 미 반환 차량 자진 인수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9. 23. ~ 2019. 10. 13.(20일간)
3. 공고대상 : 불법 주정차 피견인 차량 인수통지 반송 14건 (붙임 대상차량 현황 참조)
4. 보관장소 : 남동구 견인차량보관소 (☎032) 453-2903~4)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512-47)
5. 기타사항 : 불법 주정차 위반으로 견인되어 남동구견인차량보관소에 1개월 이상 장기 보관중인 미반환차량에 대하여 공고기간 내 인수하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 제35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차량을 강제처분(매각 또는 폐차)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문 의 처 : 남동구 교통행정과 (☎032) 453-2897)

불법 주정차 피견인 장기 미반환차량 공시송달 대상 현황

연번	차량번호	차명	소유자 성명	위반장소	보관장소
1	38머84**	그랜저XG	황**	간석3동 세븐일레븐 부근	남촌동 512-47 남동구 견인차량 보관소
2	13우44**	레간자	최**	동인천중학교 부근	
3	41구98**	로제	김**	도림동 덕수맨션 부근	
4	73노31**	스타렉스장축12인승	정**	남동공단 신원기술 부근	
5	06노65**	렉서스 ES330	김**	구월동 트윈빌 부근	
6	52누28**	투스카니	ASUNCION ****	논현동 동산마을아파트 부근	
7	02루82**	SM5	THAI ****	간석동 해돋이빌라 부근	
8	08오24**	원스톱2.0SD젤2WD AT 7인승	석광***	구월동 누리자타운 부근	
9	02가96**	NEW EF쏘나타	한**	간석동 DK웨딩홀 부근	
10	37조52**	NEW 그랜저XG(NEW GRANDEUR XG)	김**	논현동 공단공원 부근	
11	36러53**	SM5 LPLi	임**	간석동 제이씨라인 부근	
12	18머89**	그랜저(GRANDEUR)	김**	만수동 향도제일교회 부근	
13	46머98**	제어맨W	(주)자****	구월동 문두영베이커리 부근	
14	86루86**	스타렉스6밴오토(STAREX VAN)	김**	간석동 광명교회 부근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19-1687호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9. 25.

남 동 구 청 장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이 조례를 전부개정함

2. 주요내용

- 보육정책위원회(안 제2조)
- 구립어린이집의 설치, 운영위탁, 수탁자의 의무 등(안 제3조~ 제8조)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능, 구성 등(안 제9조~ 제11조)
- 지도·감독, 위탁의 취소(안 제12조, 제13조)
- 부모모니터링단, 보육 멘토단 구성·운영(안 제14조, 제15조)
- 비용의 보조, 보조금의 반환명령, 정산보고, 평가(안 제16조~ 제1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보육정책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5841, FAX 453-5889)
-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참고사항

- 「영유아보육법」 제6조, 제7조, 제12조, 제24조, 제25조의2, 제27조, 제28조, 제36조, 제40조, 제42조, 제51조의2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제11조, 제13조~제15조, 제24조, 제26조의2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7조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9 년 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보육정책위원회(안 제2조)
- 구립어린이집의 설치, 운영위탁, 수탁자의 의무 등(안 제3조~ 제8조)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능, 구성 등(안 제9조~ 제11조)
- 지도·감독, 위탁의 취소(안 제12조, 제13조)
- 부모모니터링단, 보육 멘토단 구성·운영(안 제14조, 제15조)
- 비용의 보조, 보조금의 반환명령, 정산보고, 평가(안 제16조~ 제19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영유아보육법」 제6조, 제7조, 제12조, 제24조, 제25조의2, 제27조, 제28조, 제36조, 제40조, 제42조, 제51조의2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제11조, 제13조~제15조, 제24조, 제26조의2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7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한다.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육정책위원회) ①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남동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회의 및 위원의 임기 등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3조(구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구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보육수요를 고려하여 동별로 1개소 이상 설치한다.

② 구립어린이집의 명칭은 구립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4조(운영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 제24조의2에 따라 구립어린이집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1. 구립어린이집 원장의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2. 위탁 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어린이집 운영 경험이 없는 경우
3. 시설의 재건축 등 시설물의 변동이 예정된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구립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공개경쟁에 관한 내용,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남동구와 체결한 위·수탁 계약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이 지도 명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 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보육교직원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년 예산 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남동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6조(보육교직원 임면) ① 구청장은 구립어린이집의 원장을 임면하며 원장의 제청으로 보육교직원을 임면한다. 다만 구립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구립어린이집의 원장을 임면하며, 수탁자가 개인인 경우 원장이 된다.

② 보육교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지원 및 비용부담)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을 무상대여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제8조(남동구청어린이집 설치·운영) ① 구청장이 법 제14조에 따라 설치하는 남동구청 직장어린이집의 명칭을 “남동구청어린이집”으로 하며, 이 조례에서 정한 구립어린이집에 관한 사항에 준하여 운영한다.

② 남동구청어린이집의 보육대상은 소속 직원의 자녀를 우선 입소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입소한 직원의 자녀가 정원에 미달되었을 경우 지역주민의 자녀를 입소시킬 수 있으며 입소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7급 이하(이에 상당하는 계약직·공무직 등 포함) 직원 자녀
2.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한 공무원 자녀
3. 법 제28조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른 지역주민 자녀

③ 구청장은 남동구청어린이집의 운영 및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동구청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2. 남동구청어린이집 입소아동 보육료
3. 그 밖에 구립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경비에 준하는 사항

제9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남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센터를 법 제51조의2제1항 및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되, 계약만료시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10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영 제13조에 관한 사항
2. 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장난감 및 도서 등 대여
3. 부모 소모임 등 양육정보 교류공간 제공

제11조(센터의 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며,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상담사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② 센터의 장 및 보육전문요원은 각각 영 제14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과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③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센터의 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운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임면하고, 보육전문요원 및 그 밖의 종사자는 센터의 장이 임면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구립어린이집의 운영 실태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수탁자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사항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사항 및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구립어린이집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25조에 해당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 및 노령, 파산, 그 밖의 사유로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공익상 필요하거나 지역여건 변화 등으로 구청장이 구립어린이집을 직영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3. 수탁기관이 위·수탁 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4.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5. 수탁기관이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6. 그 밖에 도시계획사업 또는 재개발, 재건축 등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구청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4조(부모모니터링단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보육환경을 모니터

링하고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하기 위하여 보육·보건 전문가로 점검단(이하 “부모모니터링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부모모니터링단의 직무, 구성·운영, 교육, 비용 지원 및 직무 수행 등 필요한 사항은 법 제25조의2 및 시행규칙 제27조를 따른다.

③ 구청장은 부모모니터링단에 대한 교육 및 운영을 제9조에 따른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보육 멘토단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멘토링을 하기 위하여 보육 전문가로 보육 멘토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보육 멘토단의 구성·운영, 기능, 교육, 비용 지원 및 직무 수행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비용의 보조)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한다.

② 구청장은 영 제24조제1항제7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차량운영비 및 비품·장비 구입비
2.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에 따른 비용
3. 영유아 급간식의 질 향상 및 영양 기능을 높이기 위한 비용
4. 급식재료 공동구매 추진위원회 심사 및 모니터링 활동 비용
5. 보육 멘토단 운영에 필요한 비용
6. 어린이집 연합회 또는 보육교직원 관련 행사, 현장학습, 발표회 등 행사 비용
7. 그 밖에 구청장이 보육사업 및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경우 수탁자, 수탁기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어린이집연합회 등 단체의 대

표(이하 “수탁자 등”이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용을 우선 또는 차등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기관
2.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아동별 지원
3.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받은 기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보조금의 반환명령) 구청장은 법 제4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 등에게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18조(정산보고)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수탁자 등은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에 따라 지원 목적 안에서 성실하게 집행하고 그 집행 결과를 일정 기간 내에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평가) 구청장은 보육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모범어린이집 또는 우수 보육교직원에게 표창할 수 있으며, 평가기준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준용규정)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청 공고 제2019-1695호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자동차(이륜차 포함) 공시송달 공고

관내 장기간 무단방치 된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자진이동안내문을 발송하고 강제처리(직권폐차)하고자 하나 소유주 미상으로 발송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9. 9. 26.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공 고 명 :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자동차(이륜차 포함)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9.09.26. ~ 2019.10.10
3. 공고대상 : 등록번호판 없는 차량 및 이륜차 10대
4. 공고내용

가. 자동차소유자(점유자)는 상기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를 자진이동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범칙금(100~150만원)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 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81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이해관계인(저당 및 압류권자)은 상기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직권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차량내 모든 물품(비품)도 강제처리 됩니다.

소유주 미상 이륜차 공시송달 공고내역

연번	접수번호	차량등록번호	차명	수취인명	주소	발송일자	미배달사유	발치장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견인(예정)일	보관장소	비고
1	2019-00416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남동구 간석동940-2	2019.09.23이후	견인예정	
2	2019-00418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남동구 논현동614-1	2019.09.23이후	견인예정	
3	2019-00419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남촌동198-5(큰방죽사거리)	2019.10.05이후	견인예정	
4	2019-00424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남동구 구월로125번길 (예술고등학교 반대쪽)담벼락	2019.10.05이후	견인예정	
5	2019-00425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남동구 구월로121번길 (시청후문 칼라복사집 앞)인도면	2019.10.05이후	견인예정	
6	2019-00426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남동구 구월로125번길3-8	2019.10.05이후	견인예정	
7	2019-00427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남동구 예술로258번길(파라다이스)주차장입구 도로변	2019.10.05이후	견인예정	
8	2019-00430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논현동731-7(소래포구역 광장 공원)	2019.10.08이후	견인예정	
9	2019-00431	번호판없음(2대)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남동구 구월2동 희망아파트2동3동사이 관리소앞	2019.10.09이후	견인예정	
10	2019-00444	번호판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남동구 담방서로18-4(만수6동성당 정문옆 전신주)	2019.10.13이후	견인예정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9-1700호

2019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2019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이 결정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개별주택가격이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19. 9. 30.

남 동 구 청 장

1. 2019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 가. 공시대상: 2019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사이에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단독주택
- 나. 공시 기준일: 2019년 6월 1일
- 다. 개별주택수: 62호
- 라. 공시사항: 개별주택의 소재지, 면적, 가격
- 마. 열람장소: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남동구청 세무과

2. 이의신청방법

- 가. 기간: 2019년 9월 30일 ~ 10월 30일
- 나. 신청인: 공시대상 주택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다. 방법: 남동구청 세무과 방문 또는 팩스 제출
- 라. 처리: 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 결과 통지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9-1704호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안전기준위반)
처분사전통지서반송분 공시송달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안전기준위반 차량소유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 **마7665외 9건 (첨부파일 참조)
2. 기 간 : 2019. 9.26.(목) ~ 10.10.(목)
3. 내 용
- 가. 납부의무자께서는 공고기한 내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 나.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행위위반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가산금이 최고 75%까지 부과되며
- 다.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조치가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문의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5).

2019. 9. 26.

남 동 구 청 장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2019년 9월분) 공시송달내역

순번	차량번호	성명	반송일자	반송사유	위반항목	우편번호	주소
1	**마7665	김성호	2019-09-05	폐문부재	차량측면 및 바퀴 불법등화장치 설치	21562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 ****동 ****호 (구월동, *****)
2	**가1751	민*인	2019-09-09	폐문부재	그랜저 글라스윙 LED	21511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 ***, *동 ***호 (간석동, **빌라)
3	**버3816	정*진	2019-09-10	폐문부재	번호판 미부착 운행	21547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 ***번길 * (구월동)
4	**서6852	**** RILONG	2019-09-10	폐문부재	후미등 미인증 LED	21550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번길 **, ***호 (간석동, *****)
5	**수9246	한*희	2019-09-11	폐문부재	보조제동등 점멸, 리플렉터 LED, 후미등 미인증 LED	21501	인천광역시 남동구 염전로 ***, ***동 ****호 (간석동, *****)아파트)
6	**나4451	장*양	2019-09-17	폐문부재	방향지시등 등화상이	21501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원대로 ***번길 *, *동 ***호 (간석동, **아파트)
7	인천**바8376	배*영	2019-09-17	폐문부재	후면 불법등화 설치	21542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번길***, ****호 (구월동)
8	**수3141	원*영	2019-09-18	폐문부재	리플렉터 LED	21539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번길 **~**, C동 ***호 (만수동)
9	경기파주하1835	정*선	2019-09-25	수취인불명	번호판주면 불법 LED 설치	21667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번길 **, ***동 ****호 (논현동, 인천소래****단지)
10	**오9998	조*욱	2019-09-26	폐문부재	전면 미인증 LED	21566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번길 **, 3층 (구월동)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9-170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차량 소유자에 대하여 동법 제84조 제3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 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부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과태료 부과고지서)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처분 부과 및 독촉 고지서를 우편(등기)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합니다.

2019. 9. 26.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공 고 명: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처분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2. 대 상 자: **무0953외 2건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서 송달불능자)
※ 과태료처분 부과 및 독촉 내역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에서 열람가능 함.
3. 공고기간: 2019.09.26. ~ 2019.10.10. 까지
4. 공고내용
가. 납부장소: 시중 은행 등 금융기관
나. 부과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3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별표 2]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다. 이의신청: 과태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0조 제1항)
라.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4조)
- 가산금이 최고 75% 부과(익월까지 가산금3%, 그 후 중가산금 매월1.2%)됨
- 체납처분: 부동산 등의 압류 후 체납 처분됨
5. 문 의 처: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동차관리과 자동차관리팀(☎ 032-453-2825)

자동차관리법위반(불법등화장치) 과태료 부과 및 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연번	차량번호	납부자명	납부자주소	내용	반송일	과태료
1	**무0953	강*희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 ***호 (구월동, *****)	불법등화장치 과태료 독촉 고지서	2019.09.18.	31,260
2	**가0801	홍*화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번길 *-**, *동***호 (간석동, **빌라)	불법등화장치 과태료 독촉 고지서	2019.09.18.	31,260
3	**마9964	이*훈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번길 *-**, ***호 (만수동, ***다세대주택)	불법등화장치 과태료 독촉 고지서	2019.09.18.	31,260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9-1706호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간석성락아파트 재개발 정비구역 어린이공원) 입안(안)을 위한 공고 · 열람

도시계획시설(공원:간석성락아파트 재개발 정비구역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을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남동구청 공원녹지과(☎032-453-285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며,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 · 공고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9. 27.

남 동 구 청 장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공원면적(㎡)	비 고
최초 결정	간석성락아파트 재개발 정비구역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514 일대	1,848.8	

2.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3.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가.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나. 의견제출 : 입안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

다. 열람장소 : 남동구청 공원녹지과 (☎032-453-2852)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19-117호

남동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9. 23.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동구에 거주하는 방역취약계층에 대한 방문방역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2.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 (안 제1조 ~ 제2조)
- 방역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신청에 관한 사항 : (안 제3조~제4조)
- 방문방역기동반 편성 및 위탁에 관한 사항 : (안 제5조~제6조)
- 방역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안 제7조)
- 장비 및 예산의 확보에 관한 사항 : (안 제8조)
- 대장비치 및 보고에 관한 사항 : (안 제9조 ~ 제10조)

3. 입법예고 기간 : 2019. 9. 23 ~ 9. 30. (7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동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4,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동구에 거주하는 방역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문방역”이란 위생해충 구제 및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외)과 단독주택(이하 “대상주택”이라 한다) 중 방문방역 신청 세대의 실내·외 방역을 말한다.

2. “방역취약계층”이란 사회·경제적 여건 등으로 소득 및 위생해충 구제에 취약한 구에 주소를 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세대 및 차상위계층 세대

나. 국가유공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세대

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정 세대

라. 「남동구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세대 및 북한이탈주민 세대

마.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3조(방역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방역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대상주

택에 대한 방문방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방역취약계층의 세대주 및 세대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방문방역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제출하거나 전화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방역 신청은 세대 당 연 1회로 한정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 지원 대상주택에 대한 방문방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방문방역기동반 편성) 구청장은 방문방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구 보건소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방문방역기동반을 둔다.

제6조(위탁) 구청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그 업무를 소독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방역 수수료) 제4조에 따른 방문방역은 무료로 한다.

제8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 비치 등) ① 구청장은 방문방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방문방역 접수처리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방역약품 관리대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6조에 따라 소독업자가 대행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 보건소장은 매년 1회 이상 방문방역 운영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방 문 방 역 신 청 서(제4조 관련)

접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7일
신 청 자	세대주 성명		주 소		
	생 년 월 일		연락처		
	주택형태	☐ 아파트 및 공동주택 (m ²) ☐ 단독주택			
해당란에 표기	☐ 방역 희망 일시(20 .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세대 ☐ 국가유공자, 장애인(1급~3급) 또는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 ☐ 다문화가정 세대, 사할린 한인 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세대 ☐ 기타 세대()				

「남동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방문방역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 조례 제4조에 따른 정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업무처리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정보의 확인 조차
 니다.

20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호서식]

방문방역 접수처리대장(제9조 관련)

○ 동 행정복지센터, 남동구 보건소 방문 방역자 : (서명)

번호	신청일자	신청자 성 명	연락처	주 소 (상세하게 기재)	처 리		방역 확인 (신청자)
					예정일	완료일	
1							
2							
3							
4							
5							
6							
7							
8							
9							
10							

[별지 제3호서식]

방역약품 관리대장(제9조 관련)

○ 품 명 :

[illegible]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별지 제1호서식)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남동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

2. 비용추계 결과**가. 추계의 전제**

- 방역취약계층 현황

(단위 : 세대, 명)

합 계	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1급~3급	다문화 가 정	사할린 및 북한이탈주민	65세이상 독거노인
85,388	40,045세대	6,642세대	5,177세대	9,739명	3,633세대	1,811세대	18,341세대

나. 추계 결과

- 대 상 : 방역취약계층 중 신청인원 연간 1,200명(1.4%)

- 소요예산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천원)	산 출 기 초
인건비(10개월*2명)	71,365	- 기간제근로자 2명(79,280원*2명*10개월) - 각종수당(주후수당, 명절휴가비 등)
방문방역 전용차량	15,000	소형승용차 1대 + 조달수수료
차량유지관리비	3,000	자동차세 등 차량유지관리비 및 유류비
소독장비 구입	1,000	초미립자 분사 소독기 2대
약품구입	6,000	살균제, 살충제, 바퀴구제제 등
합 계	96,365	

- 소요예산 : 96,365천원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불임**4. 부대의견 : 없음**

작성자 : 남동구의회 의원 유광희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세 출	96,365	83,000	86,000	89,000	92,000	446,365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국비					
	시비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조정교부금					
	소 계	96,365	83,000	86,000	89,000	446,365
	지방세	96,365	83,000	86,000	89,000	446,365
	세외수입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연차별 증액요인은 기간제근로자(2명) 인건비 인상분 등 반영

[참고자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9조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4. 6., 2007. 5. 17., 2009. 12. 29., 2011. 7. 14., 2017. 4. 18.>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독 의무)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②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③ 제2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제52조제1항에 따른 소독장비를 갖추었을 때에는 그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직접 소독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1.>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방역기동반의 운영 및 소독의 기준 등)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할 보건소마다 방역기동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 법 제51조제1항 및 제3항 단서에 따른 소독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4. 12. 31.>

③ 법 제51조제1항 및 제3항 단서에 따른 소독의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④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별표 7의 소독횟수 기준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8. 28., 2015. 12. 29., 2016. 1. 19., 2017. 4. 18.>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을 말하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19-118호

남동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남동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9. 26.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해수면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로부터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 목적,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3조)
- 지원대상,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제5조)
-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3. 입법예고 기간 : 2019. 9. 26 ~ 10. 01.(5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0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동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3,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수면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로부터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2.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 등”이라 한다)의 안전이 위협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 가. 사람의 익수·추락·고립·표류 등의 사고
 - 나. 선박 등의 침몰·좌초·전복·충돌·화재·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3.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등의 수색·구조·구난과 구조된 사람·선박 등 및 물건의 보호·관리·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동구 관할의 해수면에서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또는 단체, 협회 등에 적용한다.

제4조(지원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대하여 공공

기관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또는 단체, 협회 등 및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의 소유자로 한다.

1. 구 관할 해수면에서 발생한 선박 등의 조난사고 및 익수자·고립자 등의 인명구조 관련 사고
2.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조난사고

제5조(경비지원) 구청장은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또는 단체, 협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및 다른 규정에 따라 경비의 지원을 받은 민간인 또는 단체, 협회 등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6조(지급기준) ① 지원 경비는 수난구호활동에 사용된 선박이나 장비 등의 유류비와 인건비로 한정한다. 다만, 유류비와 인건비 이외에 구청장이 원활한 수난구호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또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지원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지급 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수난구호활동 참여자 중 지원금을 받으려는 민간인 또는 단체, 협회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수난구호기관의 장, 해양경찰파출소장의 확인을 받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지원금을 중복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수난구호비용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종사업무				
구호 명세	유형	내용		
	동원장비			
	사용시설 등			
	기타			
구호비용	금액			
	산출근거	* 필요시 첨부 서류로 제출합니다.		

「남동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

해양경찰 파출소장 (인)

남 동 구 청 장 귀하

청구인	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

210mm × 297mm (백상지 80g/㎡)

[참고자료]

관계법령 검토와 발체사항

관련법령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 수상레저안전법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남동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5조(경비지원) ~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따른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인이나 단체에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함에 따라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작성자 : 남동구의회 의원 이정순

[참고자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1.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2.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3. "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
4. "수난구조"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수색·구조·구난과 구조된 사람·선박등 및 물건의 보호·관리·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5.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선박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 가. 사람의 익수·추락·고립·표류 등의 사고
 - 나. 선박등의 침몰·좌초·전복·충돌·화재·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6. "수난구조협력기관"이란 수난구조를 위하여 협력하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7.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
8.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9.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등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선박등에 실린 화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10. "구조대"란 수색 및 구조활동을 신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된 인원으로 편성되고 적절한 장비를 보유한 단위조직을 말한다.
11. "민간해양구조대원"이란 지역해역에 정통한 주민 등 해양경찰관서에 등록되어 해양경찰의 해상구조활동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12. "표류물"이란 점유를 이탈하여 수상에 떠 있거나 떠내려가고 있는 물건을 말한다.

13. "침몰품"이란 점유를 이탈하여 수상에 가라앉은 물건을 말한다.

제30조(민간해양구조대원의 처우 등) ① 민간해양구조대원은 해양경찰의 해상구조 및 조난사고 예방·대응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 ② 민간해양구조대원이 제1항에 따라 해상구조 및 조난사고 예방·대응 활동을 지원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에서 민간해양구조대원이 수난구조 활동에 참여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4.>
- ④ 구조본부의 장은 민간해양구조대원의 구조활동에 필요한 장비 대여 및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 ⑤ 민간해양구조대원이 구조업무 및 구조 관련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입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의 치료 또는 보상금의 기준·절차 등은 제2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7. 24., 2016. 1. 27.>

제39조(수난구조비용의 지급) ①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수난구조에 종사한 자와 일시적으로 사용된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임차인 또는 사용인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수난구조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7. 24.> 1. 구조된 선박등의 선장등 및 선원 등 2.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조난을 야기한 자 3. 정당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구조를 강행한 자 4. 조난된 물건을 가져간 자

- ② 제1항의 "수난구조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1. 제16조제3항에 따른 조난된 선박등의 예인에 소요된 비용 2. 제29조제1항의 명령에 따라 조난된 선박등과 그 여객·승무원의 수난구조에 종사한 자의 노무에 대한 보수와 그 밖의 구조비용 3. 제29조제1항에 따른 선박·자동차·항공기·토지·건물, 그 밖의 물건 등의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비용 4. 구조된 물건의 운반·보관 또는 공매에 소요된 비용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민간해양구조대원의 수당)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구조본부의 장은 해상구조활동(교육·훈련활동을 포함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된 민간해양구조대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출동수당
2. 교육·훈련수당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수상레저기구"란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는 선박이나 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해수면"이란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7. "내수면"이란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3.28.]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고 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19-117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주택법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동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 9. 23.

남 동 구 청 장

1. 사 업 명

- 인천 소래구역 공동1BL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의 성명, 주소

- 성 명 :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대표자 이창하)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삼성동, 20층)

3. 사업 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6-18 외 2필지
- 사업규모 : 지하2층/지상29층, 7개동
공동주택(아파트 75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건축면적 [변경] : 4,944.7531㎡ (증 9.8434㎡)
- 연 면 적 [변경] : 95,936.6818㎡ (증 2.6949㎡)
- 사 업 비 : 226,856,815천원

4. 사업시행기간(예정) [변경]

- 당초: 2017. 05. 01. ~ 2019. 09. 30., 변경: 2017. 05. 01. ~ 2019. 10. 14.

5. 주택법 제1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6. 관계도서는 우리 구 공동주택과(☎032-453-6423)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자에게 보입니다.

고 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19-118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돌산마루1호
공영주차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돌산마루1호 공영주차장】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453-2952) 및 교통행정과(☎453-268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9. 9. 27.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940-1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명 칭 : 돌산마루1호 공영주차장 증축공사

3. 사업규모

- 대지면적 : 1,763.7㎡
- 건축규모 : 4,051.5㎡ (1층:1350.5㎡, 2층:1350.5㎡, 3층:1350.5㎡)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남동구청장(교통행정과 주차시설팀)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만수동)

5. 사업의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 기 정 : 2017.12.29. ~ 2018.12.30.
- 변 경 : 2017.12.29. ~ 2020.06.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일련 번호	지 번 (간석동)	지목	지 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1	940-1	주차장	1,763.7	1,763.7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재로 633				
소 계				1,763.7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주차장	노외 주차장	간석동 224-80 일원	1,763.7	(남동구청 2001.10.05.)	

고 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19-119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9. 24.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621 외 4건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621 외 4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5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별 도 열 람 (5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4)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 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46-7, 1146-8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621 (구월동)	20090706	고려시대 인천의 이름인 인주를 인용하여 제명	20190924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인주대로 621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621을 건물번호로 부여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05-15	인천광역시 남동구 능허대로 583 (고잔동)	20090706	중국의 사신을 맞이했던 능허대를 통과하는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190924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능허대로 583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583을 건물번호로 부여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81-33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692번길 7 (구월동)	20091116	남동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9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90924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남동대로692번길 7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7을 건물번호로 부여	
4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373-21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로12번길 22-12 (도림동)	20091116	도림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90924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도림로12번길 22-12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22-12를 건물번호로 부여	
5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587-18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로566번길 26 (간석동)	20091116	석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6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90924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석정로566번길 26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26을 건물번호로 부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46-7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621 (구월동)	2019.9.24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46-8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619 (구월동)	2019.9.24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81-33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692번길 7 (구월동)	2019.9.24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373-21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로12번길 22-12 (도림동)	2019.9.24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4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587-18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로566번길 26 (간석동)	2019.9.24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19-120호

상세주소 직권부여에 따른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4 제3항 및 시행령 제11조의12 제4항에 따라 직권 부여한 상세주소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9. 25.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35번길 13(간석동)
(101,102,201)외 355건

○ 상세주소의 부여·변경 기준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1조의11(상세주소의 부여·변경 기준)에 따라 부여합니다.

○ 상세주소 변경 등

-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1조의12(상세주소의 부여·변경·폐지 절차)에 따라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상세주소를 변경하고 그 결과를 도로명 주소대장에 기록한 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참고사항

-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경우 상세주소(동·층·호)를 임의 사용하여 공공기관 발송 우편물의 반송·분실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민원 발생 및 그에 따른 국가 경쟁력 약화 초래되는 문제점이 있어 각종 공적장부에 사용 할 수 있도록 상세주소를 부여하였습니다.

상세주소 직권부여 고시 목록

접수번호	작업일자	신청구분	도로명주소	동명칭	지하여부	층명칭	호명칭	호구분
22838	2019-09-05	상세주소부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28번길 39-24 (구월동)		지상	3	302	
22796	2019-09-05	상세주소부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35번길 13 (간석동)		지상	1	102	
22796	2019-09-05	상세주소부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35번길 13 (간석동)		지상	1	101	
22796	2019-09-05	상세주소부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35번길 13 (간석동)		지상	2	201	
22795	2019-09-05	상세주소부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41번길 9 (간석동)		지상	2	201	
22795	2019-09-05	상세주소부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41번길 9 (간석동)		지상	1	101	
22795	2019-09-05	상세주소부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41번길 9 (간석동)		지상	1	102	
22795	2019-09-05	상세주소부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41번길 9 (간석동)		지상	1	103	
22795	2019-09-05	상세주소부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41번길 9 (간석동)		지상	2	203	
22795	2019-09-05	상세주소부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41번길 9 (간석동)		지상	3	301	
22795	2019-09-05	상세주소부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41번길 9 (간석동)		지상	2	202	
22793	2019-09-05	상세주소부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346번길 14 (간석동)		지하	1	B02	
22793	2019-09-05	상세주소부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346번길 14 (간석동)		지하	1	B01	
22793	2019-09-05	상세주소부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346번길 14 (간석동)		지상	3	301	
22793	2019-09-05	상세주소부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346번길 14 (간석동)		지상	2	202	
22793	2019-09-05	상세주소부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346번길 14 (간석동)		지상	2	201	
22793	2019-09-05	상세주소부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346번길 14 (간석동)		지상	1	101	
22793	2019-09-05	상세주소부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346번길 14 (간석동)		지상	1	102	
22791	2019-09-05	상세주소부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55번길 8 (간석동)		지상	2	202	
22791	2019-09-05	상세주소부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55번길 8 (간석동)		지상	3	301	
22791	2019-09-05	상세주소부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55번길 8 (간석동)		지상	1	102	
22791	2019-09-05	상세주소부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55번길 8 (간석동)		지상	1	101	
22791	2019-09-05	상세주소부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55번길 8 (간석동)		지상	2	201	
22790	2019-09-05	상세주소부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599번길 19 (간석동)		지상	2	201	
22790	2019-09-05	상세주소부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599번길 19 (간석동)		지상	1	101	
22790	2019-09-05	상세주소부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599번길 19 (간석동)		지상	1	상가1호	
22789	2019-09-05	상세주소부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599번길 26-7 (간석동)		지상	1	104	
22789	2019-09-05	상세주소부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599번길 26-7 (간석동)		지상	3	302	
22789	2019-09-05	상세주소부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599번길 26-7 (간석동)		지상	3	301	
22789	2019-09-05	상세주소부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599번길 26-7 (간석동)		지상	2	205	
22789	2019-09-05	상세주소부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599번길 26-7 (간석동)		지상	2	204	

[illegible]

제1495호			인천광역시남동구 구보		2019. 9. 27. 금요일			
22548	2019-09-24	상세주소부여(직권)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214번길 34-6 (만수동)	1	지하	1	101	
22548	2019-09-24	상세주소부여(직권)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214번길 34-6 (만수동)	1	지하	1	102	
22548	2019-09-24	상세주소부여(직권)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214번길 34-6 (만수동)	1	지상	2	201	
22548	2019-09-24	상세주소부여(직권)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214번길 34-6 (만수동)	1	지상	1	102	
22548	2019-09-24	상세주소부여(직권)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214번길 34-6 (만수동)	1	지상	1	101	
22547	2019-09-24	상세주소부여(직권)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판로64번길 58 (만수동)	1	지상	1	102	
22547	2019-09-24	상세주소부여(직권)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판로64번길 58 (만수동)	1	지상	2	201	
22547	2019-09-24	상세주소부여(직권)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판로64번길 58 (만수동)	1	지하	1	101	
22547	2019-09-24	상세주소부여(직권)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판로64번길 58 (만수동)	1	지상	1	101	
22546	2019-09-24	상세주소부여(직권)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판로64번길 62 (만수동)	1	지하	1	102	
22546	2019-09-24	상세주소부여(직권)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판로64번길 62 (만수동)	1	지상	2	201	
22546	2019-09-24	상세주소부여(직권)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판로64번길 62 (만수동)	1	지하	1	101	
22546	2019-09-24	상세주소부여(직권)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판로64번길 62 (만수동)	1	지상	1	101	
22545	2019-09-24	상세주소부여(직권)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판로64번길 62-1 (만수동)	1	지상	1	101	
22545	2019-09-24	상세주소부여(직권)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판로64번길 62-1 (만수동)	1	지상	1	102	
22545	2019-09-24	상세주소부여(직권)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판로64번길 62-1 (만수동)	1	지상	2	201	
22545	2019-09-24	상세주소부여(직권)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판로64번길 62-1 (만수동)	1	지하	1	101	
22545	2019-09-24	상세주소부여(직권)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판로64번길 62-1 (만수동)	1	지하	1	102	

제1495호

인천광역시남동구 구보

2019. 9. 27. 금요일

고시

인천광역시 남동구고시 제2019-121호

도시계획시설【녹지: 소래구역 완충녹지1, 2, 3】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도시계획시설【녹지: 소래구역 완충녹지1, 2, 3】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453-295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9. 9. 27.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6-9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 사업

- 명 칭: 논현동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1, 2, 3) 조성공사

3. 사업규모

- 완충녹지1: A=1,553㎡

- 완충녹지2: A=1,850㎡

- 완충녹지3: A=2,686㎡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명 칭: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대표이사 이창하]

-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삼성동, 20층)

5. 사업의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 기 정 : 2018.09.07. ~ 2019.09.30.

- 변 경 : 2018.09.07. ~ 2019.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붙임」

7. 관계도서 :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 286 -

□ 토 지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논현동)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권리관계	비고
				완충녹지1	완충녹지2	완충녹지3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66-67	도	30.0		30.0		인천광역시					
2	66-68	도	7.0		7.0		인천광역시					
3	66-69	도	113.0		113.0		인천광역시					
4	66-70	도	2.0	2.0			인천광역시					
5	66-87	잡	28.0		28.0		****신탁(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 (**동, **층)				
6	66-88	잡	588.0		588.0		****신탁(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 (**동, **층)				
7	66-89	잡	1,340.0			1,340.0	****신탁(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 (**동, **층)				
8	66-91	잡	1,078.0		1,078.0		****신탁(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 (**동, **층)				
9	66-92	잡	942.0	942.0			****신탁(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 (**동, **층)				
10	66-94	잡	609.0	609.0			****신탁(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 (**동, **층)				
11	66-106	잡	1,279.0			1,279.0	****신탁(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 (**동, **층)				
12	66-108	도	6.0		6.0		인천광역시					
13	66-110	잡	67.0			67.0	****신탁(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 (**동, **층)				
계			6,089	1,553	1,850	2,686						

고 시

인천광역시 남동구고시 제2019-122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도림2지구 소3-7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 도림2지구 소3-7호선】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453-2952, 297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9. 9. 27.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사업시행지의 위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425-10번지 일원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 도림2지구 소3-7호선)
 - 명 칭: 도림2지구 (소3-7호선) 진입도로 개설공사
-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당 초: B=6.0m, L=540.1m, A=5,082㎡
 - 변 경: B=6.0m, L=538.0m, A=5,093㎡
-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만수동)
- 사업의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 당 초: 2018. 10. 26. ~ 2020. 6. 30.
 - 변 경: 2018. 10. 26. ~ 2020. 10. 31.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붙임」(변경)
- 관계도서: 계제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 용지조서 (기정 · 변경)

면적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m2)	편의면적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비고
번호	시·군	구·읍	동·리				도로 내 (m2)	도로 외 (m2)	합계 (m2)	소유자	주소	지분율	소유자	주소	권리관계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543-22	도	13	13.0		13.0	국(기획재정부)						
1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543-22	도	13	13.0		13.0	국(기획재정부)					①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91-17	도	40		40.0	40.0	유**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 364번길***동***호 (약대동.엔토피아)		서인천농업협동조합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	근저당권자	
													서인천농업협동조합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	지상권자	
													남동농업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로 **(만수동)	근저당권자	
2	(나)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91-17	도	(2) 40		40.0	40.0	남동구(인천광역시)						
3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91-15	임	9		9.0	9.0	손**	인천광역시 연수구 벌포로 *****호 (연수동대동아파트)		석암신용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대로 ***** (주안동)	근저당권자	
													석암신용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대로 ***** (주안동)	지상권자	
3	(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91-15	임	(3) 9		9.0	9.0	류**	인천광역시 남구 한나루로***번길*(도화동)		석암신용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대로 ***** (주안동)	근저당권자	
													석암신용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대로 ***** (주안동)	지상권자	
4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543-16	도	1	1.0		1.0	국(기획재정부)						
4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543-16	도	1	1.0		1.0	국(기획재정부)					①	
5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산82-3	임	1	1.0		1.0	이**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본두1길**		인천산림조합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로 **(남촌동)	근저당권자	
5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산82-3	임	1	1.0		1.0	이**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본두1길**		인천산림조합	3)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로 **(남촌동)	4) 근저당권자	
6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543-20	도	42		42.0	42.0	국(기획재정부)						
6	5) 인천	남동구	논현동	543-20	도	42		42.0	42.0	국(기획재정부)						

	광역시									)						
7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543-18	도	100	100.0		100.0	국(기획재정부)						
7	6)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543-18	도	100	100.0		100.0	국(기획재정부)						
8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91-13	임	247	247.0		247.0	손**	인천광역시 연수구 벌포로 *****호 (연수동대동아파트)		석암신용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대로 ***** (주안동)	근저당권자	
													석암신용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대로 ***** (주안동)	지상권자	
8	(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91-13	임	(2) 247	247.0		247.0	류**	인천광역시 남구 한나루로***번길*(도화동)		석암신용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대로 ***** (주안동)	근저당권자	
													석암신용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대로 ***** (주안동)	지상권자	
9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91-12	임	33		33.0	33.0	손**	인천광역시 연수구 벌포로 *****호 (연수동대동아파트)		석암신용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대로 ***** (주안동)	근저당권자	
													석암신용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대로 ***** (주안동)	지상권자	
9	(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91-12	임	(3) 33		33.0	33.0	류**	인천광역시 남구 한나루로***번길*(도화동)		석암신용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대로 ***** (주안동)	근저당권자	
													석암신용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대로 ***** (주안동)	지상권자	
1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91-14	임	8	8.0		8.0	손**	인천광역시 연수구 벌포로 *****호 (연수동대동아파트)		석암신용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대로 ***** (주안동)	근저당권자	
													석암신용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대로 ***** (주안동)	지상권자	
10	(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91-14	임	(4) 8	8.0		8.0	류**	인천광역시 남구 한나루로***번길*(도화동)		석암신용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대로 ***** (주안동)	근저당권자	
													석암신용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대로 ***** (주안동)	지상권자	
11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91-16	임	19		19.0	19.0	손**	인천광역시 연수구 벌포로 *****호 (연수동대동아파트)		석암신용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대로 ***** (주안동)	근저당권자	
													석암신용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대로 ***** (주안동)	지상권자	
11	(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91-16	임	(5) 19		19.0	19.0	류**	인천광역시 남구 한나루로***번길*(도화동)		석암신용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대로 ***** (주안동)	근저당권자	
													석암신용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대로 ***** (주안동)	지상권자	

제1495호										인천광역시남동구 구보		2019. 9. 27. 금요일				
											협동조합	경원대로 *****(주안동)				
12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91-18	임	7		7.0	7.0	손**	인천광역시 연수구 벚꽃로 ****동 *****호 (연수동대동아파트)	석암신용 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대로 *****(주안동)	근저당권자		
											석암신용 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대로 *****(주안동)	지상권자			
12	(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91-18	임	(6) 7		7.0	7.0	류**	인천광역시 남구 한나루로****번길 *(도화동)	석암신용 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대로 *****(주안동)	근저당권자		
											석암신용 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대로 *****(주안동)	지상권자			
13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543-19	도	1		1.0	1.0	국(기획재정부)						
13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543-19	도	1		1.0	1.0	국(기획재정부)						
14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산75-6	임	2		2.0	2.0	국(산림청)						
14	7)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산75-6	임	2		2.0	2.0	국(산림청)						
15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산75-8	임	15		15.0	15.0	국(산림청)						
15	8)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산75-8	임	15		15.0	15.0	국(산림청)				①		
16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산75-3	임	55	55.0	-	55.0	국(산림청)						
16	9)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산75-3	임	55	55.0	-	55.0	국(산림청)				①		
17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산70-6	도	113		113.0	113.0	국(기획재정부)						
17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산70-6	도	113		113.0	113.0	국(기획재정부)						
18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산75-7	임	104		104.0	104.0	국(산림청)						
18	10)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산75-7	임	104		104.0	104.0	국(산림청)				①		
19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427-12	대	2		2.0	2.0	김**	****-					
19	11)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427-12	대	2		2.0	2.0	김**	인천 남동구 도림동 ****-			①		
20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산75-5	임	86	86.0		86.0	국(산림청)						
20	12)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산75-5	임	86	86.0		86.0	국(산림청)						

- 291 -

제1495호										인천광역시남동구 구보					2019. 9. 27. 금요일				
	시																		
21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427-15	전	9		9.0	9.0	김**	****-		인천원예농업 협동조합	인천 동구 송림동 ****-	근저당권자				
													인천원예농업 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동구 셋골로 *** (송림동)	근저당권자				
													인천원예농업 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동구 셋골로 *** (송림동)	지상권자				
21	(가)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427-15	전	(2) 9		9.0	9.0	김**	인천 남동구 도림동 ****-		인천원예농업 협동조합	인천 동구 송림동 ****-	근저당권자				
													인천원예농업 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동구 셋골로 *** (송림동)	근저당권자				
													인천원예농업 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동구 셋골로 *** (송림동)	지상권자				
22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산75-9	임	19		19.0	19.0	국(산림청)									
22	13)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산75-9	임	19		19.0	19.0	국(산림청)						①			
23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427-14	창	6		6.0	6.0	김**	****-								
23	14)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427-14	창	6		6.0	6.0	김**	인천 남동구 도림동 ****-								
24	3.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427-18	전	101		101.0	101.0	하**	****-								
24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427-18	전	101		101.0	101.0	하**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골로 ** (도림동)								
25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산73-28	임	56	56.0		56.0	하**	****-								
25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산73-28	임	56	56.0		56.0	하**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골로 ** (도림동)								
26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산70-3	도	474	474.0		474.0	국(기획재정부)									
26	3)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산70-3	도	474	474.0		474.0	국(기획재정부)									
27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427-16	전	20		20.0	20.0	김**	****-		인천원예농업 협동조합	인천 동구 송림동 ****-	근저당권자				
													인천원예농업 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동구 셋골로 *** (송림동)	근저당권자				
													인천원예농업 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동구 셋골로 *** (송림동)	지상권자				
27	(가) 인천	남동구	도림동	427-16	전	(2) 2		20.0	20.0	김**	인천 남동구		인천원예농업	인천 동구 송림동	근저당권자				

- 292 -

	광역시				0					도립동 ****		협동조합		인원예농업 합동조합	인천광역시 동구 셋골로 *** (송림동)	근저당권자	
28	4.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립동	산73-4 2	임	19		19.0	19.0	하**	****-						
28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립동	산73-42	임	19		19.0	19.0	하**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골로 ** (도립동)					①	
29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립동	산73-4 1	임	2		2.0	2.0	하**	****-						
29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립동	산73-41	임	2		2.0	2.0	하**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골로 ** (도립동)						
30	5.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립동	산73-3 4	도	17		17.0	17.0	전**	노현동 *** 소래마을풍림아파트 ***동 ***호	1/3					
										전**	시흥시 월곶동 ****-	1/3					
										이**	연수구 동춘동 *** 풍림2차아파트 ***동 ****호	1/3					
30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립동	산73-3 4	도	17		17.0	17.0	남동구(인천광역시)							
31	6.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립동	산73-3 9	임	5		5.0	5.0	전**	노현동 *** 소래마을풍림아파트 ***동 ***호	1/3					
										전**	시흥시 월곶동 ****-	1/3					
										이**	연수구 동춘동 *** 풍림2차아파트 ***동 ****호	1/3					
31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립동	산73-3 9	임	5		5.0	5.0	남동구(인천광역시)							
32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립동	427-13	전	7		7.0	7.0	김**	인천 남구 송의동 ***						
32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립동	427-13	전	7		7.0	7.0	남동구(인천광역시)							
33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립동	427-17	임	11		11.0	11.0	고**	만수동 ***	1800/ 11580					
										김**	인천 남구 송의동 ***	9780/ 11580					
33	(가)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립동	427-17	임	(2) 1 1		11.0	11.0	남동구(인천광역시)							

	시																
34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립동	산73-2 5	임	4	4.0	4.0	4.0	전**	노현동 *** 소래마을풍림아파트 ***동 ***호	1/3					
										전**	시흥시 월곶동 ****-	1/3					
										이**	연수구 동춘동 *** 풍림2차아파트 ***동 ****호	1/3					
34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립동	산73-2 5	임	4	4.0	4.0	4.0	남동구(인천광역시)							
35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립동	산70-7	도	102		102.0	102.0	국(기획재정부)							
35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립동	산70-7	3) 도	102	102.0	102.0	102.0	국(기획재정부)							
36	7.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립동	산73-3 5	8. 도	1		1.0	1.0	전**	노현동 *** 소래마을풍림아파트 ***동 ***호	1/3					
										전**	시흥시 월곶동 ****-	1/3					
										이**	연수구 동춘동 *** 풍림2차아파트 ***동 ****호	1/3					
36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립동	산73-3 5	도	1		1.0	1.0	남동구(인천광역시)							
37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립동	산73-4 0	임	1		1.0	1.0	전**	노현동 *** 소래마을풍림아파트 ***동 ***호	1/3					
										전**	시흥시 월곶동 ****-	1/3					
										이**	연수구 동춘동 *** 풍림2차아파트 ***동 ****호	1/3					
37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립동	산73-4 0	임	1		1.0	1.0	남동구(인천광역시)							
38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립동	산73-2 7	임	1	1.0	1.0	1.0	전**	노현동 *** 소래마을풍림아파트 ***동 ***호	1/3					
										전**	시흥시 월곶동 ****-	1/3					
										이**	연수구 동춘동 *** 풍림2차아파트 ***동 ****호	1/3					
38	(가)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립동	산73-2 7	임	(2) 1	1.0	1.0	1.0	남동구(인천광역시)							

제1495호										인천광역시남동구 구보		2019. 9. 27. 금요일			
39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산73-2 4	도	75	75.0	75.0	전**	노현동 *** 소래마을풍림아파 트 ***동 ***호	1/3				
									전**	시흥시 월곶동 *****	1/3				
									이**	연수구 동춘동 *** 풍림2차아파트 ***동 ***호	1/3				
39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산73-2 4	도	75	75.0	75.0	남동구(인천광 역시)						
40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산73-3 8	임	18	18.0	18.0	전**	노현동 *** 소래마을풍림아파 트 ***동 ***호	1/3				
									전**	시흥시 월곶동 *****	1/3				
									이**	연수구 동춘동 *** 풍림2차아파트 ***동 ***호	1/3				
40	(가) 인천 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산73-3 8	임	(3) 1 8		18.0	18.0	남동구(인천광 역시)					
41	9. 인천광 역시	남동구	도림동	산73-3 6	임	48	48.0	48.0	전**	노현동 *** 소래마을풍림아파 트 ***동 ***호	1/3				
									전**	시흥시 월곶동 *****	1/3				
									이**	연수구 동춘동 *** 풍림2차아파트 ***동 ***호	1/3				
41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산73-3 6	임	48		48.0	48.0	남동구(인천광 역시)					①
42	10. 인천 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산73-4 4	도	33	33.0	33.0	전**	노현동 *** 소래마을풍림아파 트 ***동 ***호	1/3				
									전**	시흥시 월곶동 *****	1/3				
									이**	연수구 동춘동 *** 풍림2차아파트 ***동 ***호	1/3				
42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산73-4 4	도	33		33.0	33.0	남동구(인천광 역시)					
43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산73-3 2	임	55	55.0	55.0	전**	노현동 *** 소래마을풍림아파 트 ***동 ***호	1/3				
									전**	시흥시 월곶동 *****	1/3				

- 295 -

제1495호										인천광역시남동구 구보		2019. 9. 27. 금요일			
									이**	연수구 동춘동 *** 풍림2차아파트 ***동 ***호	1/3				
43	(가) 인천 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산73-3 2	임	(2) 5 5		55.0	55.0	남동구(인천광 역시)					
44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산73-2 6	임	165	165.0	165.0	전**	노현동 *** 소래마을풍림아파 트 ***동 ***호	1/3				
									전**	시흥시 월곶동 *****	1/3				
									이**	연수구 동춘동 *** 풍림2차아파트 ***동 ***호	1/3				
44	(가) 인천 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산73-2 6	임	(3) 1 65	165.0	165.0	남동구(인천광 역시)						
45	11. 인천 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산73-4 5	도	14	14.0	14.0	전**	노현동 *** 소래마을풍림아파 트 ***동 ***호	1/3				
									전**	시흥시 월곶동 *****	1/3				
									이**	연수구 동춘동 *** 풍림2차아파트 ***동 ***호	1/3				
45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산73-4 5	도	14		14.0	14.0	남동구(인천광 역시)					
46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산73-3 7	임	16	16.0	16.0	전**	노현동 *** 소래마을풍림아파 트 ***동 ***호	1/3				
									전**	시흥시 월곶동 *****	1/3				
									이**	연수구 동춘동 *** 풍림2차아파트 ***동 ***호	1/3				
46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산73-3 7	임	16		16.0	16.0	남동구(인천광 역시)					
47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산73-1 9	도	60	60.0	60.0	전**	노현동 *** 소래마을풍림아파 트 ***동 ***호	1/3				
									전**	시흥시 월곶동 *****	1/3				
									이**	연수구 동춘동 *** 풍림2차아파트 ***동 ***호	1/3				
47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산73-1 9	도	60	60.0	60.0	남동구(인천광 역시)						

- 296 -

제1495호 인천광역시남동구 구보										2019. 9. 27. 금요일					
48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산73-20	임	22	22.0	22.0	전** 전** 이**	논현동 *** 소래마을풍림아파트 ***호 시흥시 월곡동 ***** 연수구 동춘동 *** 풍림2차아파트 ***동 ***호	1/3 1/3 1/3				
48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산73-20	임	22	22.0	22.0	남동구(인천광역시)						
49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산73-10	도	3		3.0	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호		주식회사 한빛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가 *****	근저당권자	
49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산73-10	도	3		3.0	서**	인천 연수구 선학동 *****호		주식회사 한빛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가 *****	지상권자	
49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산73-10	도	3		3.0	서**	인천 연수구 선학동 *****호		주식회사 한빛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가 *****	① 근저당권자	
50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산73-22	임	14	14.0	14.0	서**	인천 연수구 선학동 *****호		주식회사 한빛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가 *****	근저당권자	추가필지
50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산73-22	임	14	14.0	14.0	서**	인천 연수구 선학동 *****호		주식회사 한빛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가 *****	지상권자	
50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산73-11	도	125	125.0	125.0	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호		주식회사 한빛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가 *****	근저당권자	
50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산73-11	도	125	125.0	125.0	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호		주식회사 한빛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가 *****	지상권자	
51	(나)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산73-11	도	(2) 125	125.0	125.0	서**	인천 연수구 선학동 *****호		주식회사 한빛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가 *****	근저당권자	
51	(나)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산73-11	도	(2) 125	125.0	125.0	서**	인천 연수구 선학동 *****호		주식회사 한빛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가 *****	지상권자	
52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427-19	대	9	9.0	9.0	서**	인천 연수구 선학동 *****호		주식회사 한빛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가 *****	근저당권자	추가필지
51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산73-21	도	22	22.0	22.0	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호		주식회사 한빛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가 *****	근저당권자	
51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산73-21	도	22	22.0	22.0	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호		주식회사 한빛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가 *****	지상권자	
53	(가)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산73-21	도	(3) 22	22.0	22.0	서**	인천 연수구 선학동 *****호		주식회사 한빛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가 *****	근저당권자	
53	(가)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산73-21	도	(3) 22	22.0	22.0	서**	인천 연수구 선학동 *****호		주식회사 한빛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가 *****	지상권자	

- 297 -

제1495호 인천광역시남동구 구보										2019. 9. 27. 금요일					
52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산73-33	임	6		6.0	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골로 ***(도림동)					
54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산73-33	임	6		6.0	남동구(인천광역시)					①	
53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424-10	임	187		187.0	김** 노** 노**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골로 ***(도림동) 인천광역시 남구 인주대로***번길 *****호 (주안동,남광로알아파트) 인천광역시 남구 문화로 ***, ***동 (관교동,삼환아파트)	1/3 1/3 1/3	인천산림조합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로 ***(남촌동)	근저당권자	
55	(나)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424-10	임	(2) 187		175.0	김** 노** 노**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골로 ***(도림동) 인천광역시 남구 인주대로***번길 *****호 (주안동,남광로알아파트) 인천광역시 남구 문화로 ***, ***동 (관교동,삼환아파트)	1/3 1/3 1/3	인천산림조합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로 ***(남촌동)	근저당권자	
54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산73-18	임	126	126.0	126.0	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골로 ***(도림동)					
56	3)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산73-18	임	126	126.0	126.0	남동구(인천광역시)					①	
55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425-7	도	43	43.0	43.0	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골로 ***(도림동)					
57	4)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425-7	도	43	43.0	43.0	남동구(인천광역시)					①	
56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424-8	임	218	218.0	218.0	김** 노** 노**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골로 ***(도림동) 인천광역시 남구 인주대로***번길 *****호 (주안동,남광로알아파트) 인천광역시 남구 문화로 ***, ***동 (관교동,삼환아파트)	1/3 1/3 1/3	인천산림조합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로 ***(남촌동)	근저당권자 지상권자	
58	(나)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424-8	임	(2) 218	218.0	218.0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골로 ***(도림동)	1/3	인천산림조합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로 ***(남촌동)	근저당권자	

- 298 -

									노**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번길 ***동 ***호 (주안동,남광로알아 파트)	1/3	인천산림조합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로 ***(남촌동)	지상권자	
									노**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로 ** ***동 ***호 (관교동,삼환아파트)	1/3				
57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425-8	과	7	7.0		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중앙공원로 ***동***호 (서현동,우성아파트)					
59	5)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425-8	과	7	7.0		남동구(인천광역시)					①	
58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425-14	과	5		5.0	5.0	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중앙공원로 ***동***호 (서현동,우성아파트)				
60	6)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425-14	과	5		5.0	5.0	남동구(인천광역시)				①	
59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425-9	과	74	74.0	74.0	한**	****	1487/ 1958				
									남궁**	만수동 *~*** 대동아파트 *~***	471/1 958				
61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425-9	과	74	74.0	74.0	한**	인천 남동구 도림동 *~***	1487/ 1958				
									남궁**	인천 남동구 만수동 *~*** 대동아파트 *~***	471/1 958			②	
60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425-10	임	517	517.0	517.0	한**	****	1487/ 1958				
									남궁**	만수동 *~*** 대동아파트 *~***	471/1 958				
62	(나)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425-10	임	(2) 5 17	517.0	517.0	한**	인천 남동구 도림동 *~***	1487/ 1958				
									남궁**	인천 남동구 만수동 *~*** 대동아파트 *~***	471/1 958			①	
61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425-17	과	42		42.0	42.0	한**	****	1487/ 1958			
										남궁**	만수동 *~***	471/1			

											대동아파트 *~***	958			
63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425-17	과	42		42.0	42.0	한**	인천 남동구 도림동 *~***	1487/ 1958			
										남궁**	인천 남동구 만수동 *~*** 대동아파트 *~***	471/1 958			②
62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425-23	임	53		53.0	53.0	한**	****	1487/ 1958			
										남궁**	만수동 *~*** 대동아파트 *~***	471/1 958			
64	(나)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425-23	임	(3) 5 3		53.0	53.0	한**	인천 남동구 도림동 *~***	1487/ 1958			
										남궁**	인천 남동구 만수동 *~*** 대동아파트 *~***	471/1 958			①
63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425-21	임	64		64.0	64.0	한**	****	1487/ 1958			
										남궁**	만수동 *~*** 대동아파트 *~***	471/1 958			
65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425-21	임	64		64.0	64.0	한**	인천 남동구 도림동 *~***	1487/ 1958			
										남궁**	인천 남동구 만수동 *~*** 대동아파트 *~***	471/1 958			
64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425-16	과	4		4.0	4.0	한**	****	1487/ 1958			
										남궁**	만수동 *~*** 대동아파트 *~***	471/1 958			
66	(나)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425-16	과	(4) 4		4.0	4.0	한**	인천 남동구 도림동 *~***	1487/ 1958			
										남궁**	인천 남동구 만수동 *~*** 대동아파트 *~***	471/1 958			①
65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422-5	전	28		28.0	28.0	남**	인천 남구 문학동 **** *~***호				
67	7)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422-5	전	28		28.0	28.0	남동구(인천광역시)				①	
66	12.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422-7	전	50		50.0	50.0	남**	인천광역시 남동구 매소홀로561번길 ***-***				

제1495호										인천광역시남동구 구보		2019. 9. 27. 금요일				
68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422-7	전	50		50.0	50.0	남동구(인천광역시)	***호(문학동)				①	
67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425-15	과	33		33.0	33.0	한**	****	1487/1958				
										남궁**	만수동 *---- 대동아파트 *----	471/1958				
69	(나)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425-15	과	(2) 3 3		33.0	33.0	한**	인천 남동구 도림동 *---***	1487/1958				
										남궁**	인천 남동구 만수동 *---- 대동아파트 *----호	471/1958			①	
68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425-22	임	10		10.0	10.0	한**	****	1487/1958				
										남궁**	만수동 *---- 대동아파트 *----	471/1958				
70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425-22	임	10		10.0	10.0	한**	인천 남동구 도림동 *---***	1487/1958				
										남궁**	인천 남동구 만수동 *---- 대동아파트 *----호	471/1958			②	
69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426-1	전	29		29.0	29.0	오**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 ***		평택축산업 협동조합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 (비전동)	근저당권자	
71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426-1	전	29		29.0	29.0	오**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로 ***		평택축산업 협동조합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 (비전동)	근저당권자	
70	13.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422-6	전	115		115.0	115.0	남**	인천광역시 남구 매소홀로 561번길 *---***호(문학동)					
72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422-6	전	115		115.0	115.0	남동구(인천광역시)					①	
71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422-4	전	341	341.0		341.0	남**	인천 남구 문학동 *---* ***호					
73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422-4	전	341	341.0		341.0	남동구(인천광역시)					①	
72	14.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425-20	임	208		208.0	208.0	한**	****	1487/1958				
										남궁**	만수동 *---- 대동아파트 *----	471/1958				
74	(가)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425-20	임	(2) 2 08		208.0	208.0	한**	인천 남동구 도림동 *---***	1487/1958				

- 301 -

제1495호										인천광역시남동구 구보		2019. 9. 27. 금요일				
	시									남궁**	인천 남동구 만수동 *---- 대동아파트 *----호	471/1958			①	
73	15.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617-66	도	3		3.0	3.0	국(건설부)						
75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617-66	도	3		3.0	3.0	국(건설부)					①	
74	16.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617-67	전	21		21.0	21.0	국(건설부)						
76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617-67	전	21		21.0	21.0	국(기획재정부)					①	
75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617-54	도	412	412.0	-	412.0	국(건설부)						
77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617-54	도	412	412.0		412.0	국(건설부)					①	
76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617-65	도	74		74.0	74.0	국(건설부)						
78	3)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617-65	도	74		74.0	74.0	국(건설부)					①	
77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430-22	전	1	1.0		1.0	배**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아산로 *---*동*---호 (서창동 인광그대가 아파트)					
79	4)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430-22	전	1	1.0		1.0	배**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아산로 *---*동*---호 (서창동 인광그대가 아파트)				①	
78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417	도	6,921	1.8		1.8	인천광역시 남동구						
80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417	도	6,921	1.8		1.8	인천광역시 남동구						
합 계(당초)						12,001	3,284	1,798	5,082							
합 계(변경)						12,024	3,409	1,684	5,093							

- 302 -

지장물								
연번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단위	수량	비 고
	구	동						
1	남동	논현	543-18	수목	아카시아나무	주	5	
					밤나무	주	1	
2	남동	논현	543-20	수목	참나무	주	2	
3	남동	논현	491-13	수목	아카시아나무	주	2	
4	남동	논현	491-12	수목	아카시아나무	주	6	
5	남동	논현	491-14	수목	아카시아나무	주	1	
				수목	아카시아나무	주	2	
6	남동	도림	산75-5	과실수	대추나무	주	1	
				STS 철판	광고판	개수	1	
				수목	밤나무	주	1	
7	남동	도림	산75-8	수목	아카시아나무	주	2	
				수목	아카시아나무	주	2	
8	남동	도림	산70-6	과실수	사과나무	주	7	
				과실수	사과요목	주	5	
				수목	아카시아나무	주	2	
				수목	단풍나무	주	1	
				수목	오가피	주	1	
				수목	라일락	주	1	
				수목	뽕나무	주	1	
				과실수	사과나무	주	33	
				과실수	사과요목	주	12	
				수목	잣나무	주	3	
				수목	백일홍	주	2	
				문주	1.1×1.4×1.65	개수	1	
				문주	0.7×0.5×1.36	개수	1	
				급수시설	수도계량기	개수	1	
				관정	관정	개수	1	
10	남동	도림	산73-28	과실수	사과요목	주	2	

- 303 -

제1495호				인천광역시남동구 구보			2019. 9. 27. 금요일	
11	남동	도림	427-18	과실수	사과나무	주	11	
				과실수	사과요목	주	2	
12	남동	도림	산70-7	수목	잣나무	주	1	
				수목	단풍나무	주	2	
13	남동	도림	산73-24	수목	밤나무	주	1	
				수목	아카시아나무	주	2	
				수목	잣나무	주	1	
14	남동	도림	산73-44	수목	단풍나무	주	3	
				수목	아카시아나무	주	1	
15	남동	도림	산73-45	수목	아카시아나무	주	5	
				수목	염나무	주	1	
16	남동	도림	산73-37	수목	아카시아나무	주	1	
				과실수	사과요목	주	2	
				수목	아카시아나무	주	2	
17	남동	도림	산73-20	수목	염나무	주	1	
				수목	단풍나무	주	3	
18	남동	도림	산73-10	과실수	사과요목	주	1	
				수목	염나무	주	2	
				수목	단풍나무	주	4	
				수목	참나무	주	3	
				수목	사철나무	주	2	
				수목	자귀나무	주	1	
				수목	느티나무	주	10	
				수목	뽕나무	주	1	
				수목	단풍나무	주	10	
				수목	목련	주	3	
				수목	사철나무	주	1	
21	남동	도림	424-10	과실수	사과요목	주	19	
				급수시설	급수전	개수	1	
				수목	구상나무	주	1	
22	남동	도림	424-8	수목	회양목	주	3	
				과실수	탱자나무	주	1	
23	남동	도림	425-23	수목	주목	주	2	
24	남동	도림	425-17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M2	116.1	

- 304 -

제1495호			인천광역시남동구 구보				2019. 9. 27. 금요일	
25	남동	도림	425-15	과실수	배나무	주	3	
26	남동	도림	426-1	과실수	배나무	주	4	
27	남동	도림	617-54	수목	단풍나무	주	1	
				수목	느티나무	주	1	
울타리								
연번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비 고
	구	동				M	M2	
1	남동	논현	491-16	울타리	EGI철크스	10.4		
2	남동	도림	산75-5	울타리	울타리	7.2		산75-9, 427-18
3	남동	도림	427-18	울타리	울타리	4.2		산73-28, 산70-3
4	남동	도림	424-9	울타리	석면 슬레이트	89.6	197.12	산73-9, 산73-37 산73-20, 산73-21 428-8, 424-10
5	남동	도림	424-8	울타리	울타리	49.4		425-9, 425-10
6	남동	도림	425-10	울타리	메쉬철크스	28.0		425-21, 425-16 425-5
7	남동	도림	425-10	울타리	울타리	45.2		422-5, 422-7 425-23, 425-12
8	남동	도림	422-4	울타리	울타리	44.7		425-10
9	남동	도림	422-4	울타리	울타리	41.0		617-54
10	남동	도림	617-61	울타리	메쉬철크스	55.5		617-54, 617-68 617-69
한전주								
연번	소 재 지	지 번	위 치	방 향	전주 번호	소 관 청	수량(주)	비 고
1	남동구 논현동	491-5	NO.1+2.61	좌측	8717 H 774	한국전력	1	
2	"	491-18	NO.2+8.78	좌측	8717 H 771	한국전력	1	
					번호없음	한국전력	1	보조전주
3	남동구 도림동	산70-6	NO.3+7.80	우측	8717 H 871	한국전력	1	
4	"	산75-7	NO.3+12.05	좌측	8717 H 871	한국전력	1	
5	"	산75-5	NO.4+10.77	좌측	8717 H 862	한국전력	1	
6	"	산73-24	NO.8+16.04	좌측	8817 C 071	한국전력	1	
7	"	산70-7	NO.0+7.40	우측	번호없음	한국전력	1	
8	"	산73-20	NO.10+15.67	우측	8817 C 171	한국전력	1	
9	"	산73-18	NO.12+18.49	우측	8817 C 271	한국전력	1	
10	"	424-8	NO.14+14.13	우측	8817 C 372	한국전력	1	
11	"	425-10	NO.16+16.76	좌측	8817 C 374	한국전력	1	
12	"	425-10	NO.19+3.09	우측	8817 C 381	한국전력	1	
13	"	422-4	NO.21+13.94	우측	8817 A 491	한국전력	1	

- 305 -

제1495호				인천광역시남동구 구보			2019. 9. 27. 금요일	
14	"	617-54	NO.24+4.06	우측	8817 A 301	한국전력	1	
15	"	617-54	NO.26+12.15	우측	8817 A 311	한국전력	1	
16	"	617-54	NO.26+16.40	좌측	8817 A 312	한국전력	1	
체신주								
연번	소재지	지 번	위 치	방 향	전주 번호	소 관 청	수량(주)	비고
1	남동구 논현동	491-16	NO.2+8.41	좌측	호구포-10-13	K.T 인천지점	1	
2	남동구 도림동	산75-5	NO.4+9.19	좌측	호구포-10-14	K.T 인천지점	1	
3	"	산73-24	NO.8+16.62	좌측	호구포-10-17	K.T 인천지점	1	
4	"	산73-20	NO.10+15.29	우측	번호없음	K.T 인천지점	1	
5	"	산73-18	NO.12+19.09	우측	호구포-10-19	K.T 인천지점	1	
6	"	424-8	NO.14+14.70	우측	호구포-10-20	K.T 인천지점	1	
7	"	425-10	NO.17+4.61	좌측	도림-1-20	K.T 인천지점	1	
8	"	425-10	NO.19+3.91	우측	도림-1-19	K.T 인천지점	1	
9	"	425-20	NO.22+2.00	좌측	도림-1-17	K.T 인천지점	1	
10	"	617-65	NO.24+2.62	좌측	도림-1-16	K.T 인천지점	1	
11	"	617-54	NO.26+15.47	좌측	도림-1-15	K.T 인천지점	1	
보안등								
연번	소재지	지 번	위 치	방 향	보안등 번호	소 관 청	수량(EA)	비 고
1	남동구 논현동	491-18	NO.2+8.78	좌측	도림동 105	남동구청	1	
2	남동구 도림동	산75-5	NO.4+10.77	좌측	도림동 104	남동구청	1	
3	"	산73-24	NO.8+16.04	좌측	도림동 102	남동구청	1	
4	"	산73-20	NO.10+15.67	우측	도림동 101	남동구청	1	
5	"	424-8	NO.14+14.13	우측	도림동 099	남동구청	1	
6	"	425-10	NO.16+16.76	좌측	도림동 097	남동구청	1	
7	"	425-10	NO.19+3.09	우측	도림동 096	남동구청	1	
8	"	617-54	NO.26+12.15	우측	도림동 095	남동구청	1	
CCTV								
연번	소재지	지 번	위 치	방 향	CCTV 번호	소 관 청	수량(EA)	비 고
1	남동구 도림동	425-10	NO.16+16.76	좌측	방범용CCTV 985	남동구청	1	
반사경								
연번	구분	소재지	지 번	위 치	방 향	소 관 청	수량(EA)	비 고
1	반사경	남동구 논현동	491-16	NO.2+8.10	좌측	남동구청	1	
2	반사경	남동구 도림동	산75-5	NO.4+8.36	좌측	남동구청	1	

- 306 -

○ 지장물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단위	수량	비 고
	구	동						
1	남동	논현	543-18	수목	아카시아나무	주	5	
2	남동	논현	543-20	수목	밤나무	주	1	
3	남동	논현	491-13	수목	참나무	주	2	
4	남동	논현	491-12	수목	아카시아나무	주	2	
5	남동	논현	491-14	수목	아카시아나무	주	6	
6	남동	도림	산75-5	수목	아카시아나무	주	1	
				과실수	대추나무	주	2	
				STS 철판	광고판	개소	1	
7	남동	도림	산75-8	수목	밤나무	주	1	
				수목	아카시아나무	주	2	
8	남동	도림	산70-6	수목	아카시아나무	주	2	
				과실수	사과나무	주	7	
				과실수	사과묘목	주	5	
9	남동	도림	산70-3	수목	아카시아나무	주	2	
				수목	단풍나무	주	1	
				수목	오가피	주	1	
				수목	라일락	주	1	
				수목	뽕나무	주	1	
				과실수	사과나무	주	33	
				과실수	사과묘목	주	12	
				수목	잣나무	주	3	
				수목	백일홍	주	2	
				문주	1.1×1.4×1.65	개소	1	
				문주	0.7×0.5×1.36	개소	1	
				급수시설	수도계량기	개소	1	
				정화조	1.8×1.5×1.5, 3ton	개소	1	
				과수원 고정시설	φ45×1.5T×4m	개소	20	
				사과개별지주대	4m	개소	33	
				자바라	5.4×0.55×1.45	개소	1	
수목	일본목련	주	1					

제1495호				인천광역시남동구 구보		2019. 9. 27. 금요일		
10	남동	도림	산73-28	과실수	사과묘목	주	2	
11	남동	도림	427-18	과실수	사과나무	주	11	
				과실수	사과묘목	주	2	
12	남동	도림	산70-7	수목	잣나무	주	1	
				수목	단풍나무	주	2	
13	남동	도림	산73-24	수목	밤나무	주	1	
				수목	아카시아나무	주	2	
				수목	잣나무	주	1	
14	남동	도림	산73-44	수목	단풍나무	주	3	
				수목	아카시아나무	주	1	
15	남동	도림	산73-45	수목	아카시아나무	주	5	
				수목	엄나무	주	1	
16	남동	도림	산73-37	수목	아카시아나무	주	1	
				과실수	사과묘목	주	2	
				수목	아카시아나무	주	2	
17	남동	도림	산73-20	수목	엄나무	주	1	
				수목	단풍나무	주	3	
18	남동	도림	산73-10	과실수	사과묘목	주	1	
				수목	엄나무	주	2	
19	남동	도림	산73-21	수목	단풍나무	주	4	
				수목	참나무	주	3	
				수목	사철나무	주	2	
				수목	자귀나무	주	1	
				수목	느티나무	주	10	
20	남동	도림	424-8	수목	뽕나무	주	1	
				수목	단풍나무	주	10	
				수목	목련	주	3	
				수목	사철나무	주	1	
21	남동	도림	424-10	과실수	사과묘목	주	19	
				급수시설	급수전	개소	1	
				수목	구상나무	주	1	
22	남동	도림	425-8	수목	회양목	주	3	
				과실수	탱자나무	주	1	
23	남동	도림	425-23	수목	죽목	주	2	
24	남동	도림	425-17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M2	116.1	
25	남동	도림	425-15	과실수	배나무	주	3	
26	남동	도림	426-1	과실수	배나무	주	4	
27	남동	도림	425-21	대문	철제강관	개소	1	
				수목	단풍나무	주	1	
28	남동	도림	617-54	수목	느티나무	주	1	
합 계				지장물		EA	71	

○ 울타리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비고
	구	동				M	M2	
1	남동	논현	491-16	울타리	EGI헬스	10.4		
2	남동	도림	산75-5	울타리	울타리	2.1		
3	남동	도림	산75-9	울타리	울타리	1.6		
4	남동	도림	427-18	울타리	울타리	5.1		
5	남동	도림	산73-28	울타리	울타리	0.6		
6	남동	도림	산70-3	울타리	울타리	2.0		
7	남동	도림	424-9	울타리	석면 슬레이트	8.0	17.6	
8	남동	도림	산73-9	울타리	석면 슬레이트	0.2	0.4	
9	남동	도림	산73-37	울타리	석면 슬레이트	2.3	5.06	
10	남동	도림	산73-20	울타리	석면 슬레이트	10.4	22.88	
11	남동	도림	산73-21	울타리	석면 슬레이트	16.7	36.74	
12	남동	도림	424-8	울타리	석면 슬레이트	43.0	94.6	
					울타리	17.0		
13	남동	도림	424-10	울타리	석면 슬레이트	9.0	19.8	
14	남동	도림	425-9	울타리	울타리	3.7		
15	남동	도림	425-10	울타리	울타리	55.2		
					매쉬헬스	3.7		
16	남동	도림	425-5	울타리	매쉬헬스	0.2		
17	남동	도림	425-21	울타리	매쉬헬스	23.0		
18	남동	도림	425-16	울타리	매쉬헬스	1.1		
19	남동	도림	425-12	울타리	울타리	2.4		
20	남동	도림	425-23	울타리	울타리	9.8		
21	남동	도림	422-7	울타리	울타리	16.4		
22	남동	도림	422-5	울타리	울타리	2.1		
23	남동	도림	422-4	울타리	울타리	73.1		
24	남동	도림	617-54	울타리	울타리	0.6		
					매쉬헬스	34.8		
25	남동	도림	617-61	울타리	매쉬헬스	16.5		
26	남동	도림	617-68	울타리	매쉬헬스	2.7		
27	남동	도림	617-69	울타리	매쉬헬스	1.5		
합 계						375.2	197.1	

○ 한전주								
연번	소재지	지번	위치	방향	전주번호	소관청	수량(㎡)	비고
1	남동구 논현동	491-5	NO.1+2.61	좌측	8717 H 774	한국전력	1	
2	"	491-18	NO.2+8.78	좌측	8717 H 771	한국전력	1	
					번호없음	한국전력	1	보조전주
3	남동구 도림동	산70-6	NO.3+7.80	우측	8717 H 871	한국전력	1	
4	"	산75-7	NO.3+12.05	좌측	8717 H 871	한국전력	1	
5	"	산75-5	NO.4+10.77	좌측	8717 H 862	한국전력	1	
6	"	산73-24	NO.8+16.04	좌측	8817 C 071	한국전력	1	
7	"	산70-7	NO.0+7.40	우측	번호없음	한국전력	1	
8	"	산73-20	NO.10+15.67	우측	8817 C 171	한국전력	1	
9	"	산73-18	NO.12+18.49	우측	8817 C 271	한국전력	1	
10	"	424-8	NO.14+14.13	우측	8817 C 372	한국전력	1	
11	"	425-10	NO.16+16.76	좌측	8817 C 374	한국전력	1	
12	"	425-10	NO.19+3.09	우측	8817 C 381	한국전력	1	
13	"	422-4	NO.21+13.94	우측	8817 A 491	한국전력	1	
14	"	617-54	NO.24+4.06	우측	8817 A 301	한국전력	1	
15	"	617-54	NO.26+12.15	우측	8817 A 311	한국전력	1	
16	"	617-54	NO.26+16.40	좌측	8817 A 312	한국전력	1	
합 계							17	

○ 채신주								
번호	소재지	지번	위치	방향	전주번호	소관청	수량(㎡)	비고
② 1	남동구 논현동	491-16	NO.2+8.41	좌측	호구포-10-13	K.T 인천지점	1	
③ 2	남동구 도림동	산75-5	NO.4+9.19	좌측	호구포-10-14	K.T 인천지점	1	
3	"	산73-24	NO.8+16.62	좌측	호구포-10-17	K.T 인천지점	1	
4	"	산73-20	NO.10+15.29	우측	번호없음	K.T 인천지점	1	
5	"	산73-18	NO.12+19.09	우측	호구포-10-19	K.T 인천지점	1	
6	"	424-8	NO.14+14.70	우측	호구포-10-20	K.T 인천지점	1	
7	"	425-10	NO.17+4.61	좌측	도림-1-20	K.T 인천지점	1	
8	"	425-10	NO.19+3.91	우측	도림-1-19	K.T 인천지점	1	
9	"	425-20	NO.22+2.00	좌측	도림-1-17	K.T 인천지점	1	
10	"	617-65	NO.24+2.62	좌측	도림-1-16	K.T 인천지점	1	
11	"	617-54	NO.26+15.47	좌측	도림-1-15	K.T 인천지점	1	
합 계							11	

○ 보안등

연번	소 재 지	지 번	위 치	방 향	보안등 번호	소 관 청	수 량(EA)	비 고
1	남동구 논현동	491-18	NO.2+8.78	좌측	도림동 105	남동구청	1	
2	남동구 도림동	산75-5	NO.4+10.77	좌측	도림동 104	남동구청	1	
3	"	산73-24	NO.8+16.04	좌측	도림동 102	남동구청	1	
4	"	산73-20	NO.10+15.67	우측	도림동 101	남동구청	1	
5	"	424-8	NO.14+14.13	우측	도림동 099	남동구청	1	
6	"	425-10	NO.16+16.76	좌측	도림동 097	남동구청	1	
7	"	425-10	NO.19+3.09	우측	도림동 096	남동구청	1	
8	"	617-54	NO.26+12.15	우측	도림동 095	남동구청	1	
합 계							8	

○ CCTV

연번	소 재 지	지 번	위 치	방 향	CCTV 번호	소 관 청	수량(EA)	비 고
1	남동구 도림동	425-10	NO.16+16.76	좌측	방범용 CCTV 985	남동구청	1	
합계							1	

○ 반사경

연번	구분	소 재 지	지 번	위 치	방 향	소 관 청	수량(EA)	비 고
1	반사경	남동구 논현동	491-16	NO.2+8.10	좌측	남동구청	1	
2	반사경	남동구 도림동	산75-5	NO.4+8.36	좌측	남동구청	1	
합계							2	

- 311 -

고 시

인천광역시 남동구고시 제2019-123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공공공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공공공지)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과,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 (☎032-453-295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9. 9. 27.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결정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공공공지)을 결정(변경) 하는 사항임

2.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02-3번지 일원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결정(변경) 조서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222	8	국지 도로	196	광로 3-7	대로 1-20	일반 도로	-		
변경	소로	2	222	8	국지 도로	196	광로 3-7	대로 1-20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2	223	8	국지 도로	187	소로2-222	소로2-12	일반 도로	-		
변경	소로	2	223	8	국지 도로	164	소로2-222	소로2-222	일반 도로	-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2-222	소로 2-222	▶ 변경 · 폭원 : 8m · 연장 : 196	· 소로 2-223호선 접속구간 가각부 조정
소로 2-223	소로 2-223	▶ 변경 · 폭원 : 8m · 연장 : 187m → 164m	· 소로 2-12호선 폐지로 노선 축소

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공지) 결정 조서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②	공간시설	공공공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02-3번지일원	-	증) 769 (635)	769 (635)		※지구의 :134㎡

※ ()는 만수3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면적임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②	공공공지	▶신설 - 면적 : 769㎡(635) ※ 지구의 : 134㎡	담방문화공원과 구정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5.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고 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19-124호

도시관리계획(만수3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만수3지구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과,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 (☎453-295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9. 9. 27.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I. 결정(변경)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마목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II.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17번지 일원

III. 도시관리계획(만수3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 없음)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도 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비고
1	만수3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17번지 일원	717,779.6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 (변경)

1)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 조서 (변경 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계		717,779.6	100.0	
주거지역	소 계	697,623.4	97.2	
	제1종일반주거지역	63,577.8	8.9	
	제2종일반주거지역	184,347.1	25.7	
	제3종일반주거지역	405,432.5	56.5	
	준주거지역	44,266.0	6.2	
	소 계	20,156.2	2.8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20,156.2	2.8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 조서 (변경)

가) 교통시설 (변경)

(1) 도로 (변경)

○ 도로 결정 조서 (변경)

구분	구 모				기 능	연 장 (m)	시 점	종 점	사용 형태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20	35~54	주간선	5,600 (341)	만수동 광3-7	논현동 시흥시계	일반	
기정	대로	2	48	30	보조 간선	630 (403)	만수동 810-40	대1-20	일반	
기정	대로	3	32	25	국지	638	구역계	대3-41	일반	
기정	대로	3	41	25	집산	949	광2-7	대2-48	일반	
변경	중로	1	171	20	집산	50	대1-20	공공청사	일반	
기정	중로	2	255	15	집산	228	대3-41	소1-9	일반	
기정	중로	2	256	15	국지 특수	619 (196)	대2-48	소1-11	일반 보행	
기정	소로	1	1	10~16	국지	225	대3-41	소2-256	일반	
기정	소로	1	2	10~16	국지	225	대3-41	소2-256	일반	
기정	소로	1	3	10	국지	35	대3-32	소1-1	일반	
기정	소로	1	4	10	국지	36	대3-32	소1-2	일반	
기정	소로	1	5	10~16	국지	100	대3-41	소1-7	일반	
기정	소로	1	6	10~16	국지	151	대3-41	중2-255	일반	
기정	소로	1	7	10	국지	249	중2-255	소2-6	일반	
기정	소로	1	8	10	국지	277	중2-255	소1-13	일반	
기정	소로	1	9	10	국지	91	중2-255	27호녹지	일반	
기정	소로	1	10	10	특수	23	대1-20	소2-11	보행	
기정	소로	1	11	10	국지	532	대1-20	대3-41	일반	
기정	소로	1	12	10	국지	136	소1-1	소1-11	일반	
기정	소로	1	13	10	국지	260	대3-41	구역계	일반	
기정	소로	1	14	10	국지	232	광2-7	소1-11	일반	
기정	소로	1	15	10	국지	261	소1-11	소2-20	일반	
기정	소로	1	16	10	국지	235	소1-11	소1-15	일반	
기정	소로	2	1	8	국지	111	소1-8	구역계	일반	
기정	소로	2	2	8	국지	89	소2-1	소3-6	일반	
기정	소로	2	3	8	국지	86	소2-1	소3-6	일반	
기정	소로	2	4	8	국지	131	소1-5	소2-6	일반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시 점	종 점	사용 형태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5	8	국지	271	소1-5	소1-8	일반	
기정	소로	2	6	8	국지	127	소1-8	소2-5	일반	
기정	소로	2	7	8	국지	286	소1-1	소1-12	일반	
기정	소로	2	8	8	국지	120	소1-1	소2-7	일반	
기정	소로	2	9	8	국지	28	대3-41	소2-7	일반	
기정	소로	2	10	8	국지	158	소1-11	소2-11	일반	
기정	소로	2	11	8	국지	189	소1-11	구역계	일반	
폐지	소로	2	12	8	국지	134	북측구역계	남측구역계	일반	
기정	소로	2	13	8	특수	24	대1-20	소2-11	보행	
기정	소로	2	14	8	국지	74	구역계	구역계	일반	
기정	소로	2	15	8	국지	165	소1-11	소1-14	일반	
기정	소로	2	16	8	국지	248	소1-15	소2-23	일반	
기정	소로	2	17	8	국지	34	소1-14	소2-16	일반	
기정	소로	2	18	8	국지	28	대3-41	소2-5	일반	
기정	소로	2	19	8	국지	40	소1-16	소2-16	일반	
기정	소로	2	20	8	국지	141	소1-15	소1-14	일반	
기정	소로	2	21	8	국지	94	소1-15	소2-25	일반	
기정	소로	2	22	8	국지	78	소1-15	소2-25	일반	
기정	소로	2	23	8	국지	83	소1-14	소1-16	일반	
기정	소로	2	24	8	국지	160	소1-16	소1-15	일반	
기정	소로	2	25	8	국지	232	소1-15	소3-8종점	일반	
기정	소로	2	26	8	국지	30	대3-41	소2-25	일반	
기정	소로	2	27	8	국지	35	대3-41	소2-25	일반	
기정	소로	2	28	8	국지	92	소1-7	소1-8	일반	
기정	소로	3	1	6	국지	86	소2-1	소3-6	일반	
기정	소로	3	2	6	국지	112	소1-13	소3-3	일반	
기정	소로	3	3	6	국지	125	대3-41	소1-13	일반	
기정	소로	3	4	6	국지	61	소1-7	소1-8	일반	
기정	소로	3	5	6	국지	75	소1-7	소1-8	일반	
기정	소로	3	6	6	국지	104	소1-8	구역계	일반	
기정	소로	3	7	6	국지	40	소1-13	소3-6	일반	
기정	소로	3	8	6	국지	85	광2-7	소2-25종점	일반	

※ 중로 2-256호선 ()는 특수도로(보행자전용도로) 구간내 연장임(기 결정사항 반영)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1-171	중로 1-171	▶ 변경 : 폭원 : 20m : 현장 : 42 → 50m	· 소로 2-12호선 폐지로 노선연장
소로 2-12	-	▶ 폐지 : 폭원 : 8m : 현장 : 134m	· 소로 2-12호선을 공공공지로 변경

(2) 주차장 (변경 없음)

○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1	주차장	노외주차장	만수동 1074-1번지	774.5	
기정	2	주차장	노외주차장	만수동 1090번지	1,677.3	
기정	3	주차장	노외주차장	만수동 1097-1번지	460.4	
기정	4	주차장	노외주차장	만수6동 1083-2번지	426	
기정	5	주차장	노외주차장	만수동 1097-3번지 일원	596.4	
기정	6	주차장	노외주차장	만수6동 1099-3번지	441.5	

나) 공간시설 (변경)

(1) 공원 (변경 없음)

○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168	골마루공원	근린공원	만수동 1049-1	10,379.2	
기정	-	담방문화공원	근린공원	만수동 984-10	7,126.3 (6,007.2)	
기정	182	담방공원	어린이공원	만수동 1033	1,840	
기정	183	남동공원	어린이공원	만수동 1022-4	1,500	
기정	170	시영공원	어린이공원	만수동 1078-13	1,500	
기정	171	창대공원	어린이공원	만수동 1083-1 만수동 1083-3	1,754.5	
기정	172	장승백이공원	어린이공원	만수동 1086-2	1,500	
기정	173	대덕공원	어린이공원	만수동 1096	1,654.4	

※ ()는 구역 내 면적임

(2) 녹지 (변경 없음)

○ 녹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25	-	완충녹지	만수동 1018-1번지	1,980	
기정	26	-	완충녹지	만수동 1043-3번지 일원	3,765	
기정	27	-	완충녹지	만수동 1037-1번지	5,610	
기정	28	-	완충녹지	만수동 1049-7번지 일원	3,230	
기정	29	-	완충녹지	만수동 1000-4번지, 만수동 1000-7번지	1,935.3	

(3) 공공공지 (변경)

○ 공공공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공공공지	만수동 1052	-	증)456	456	
신설	②	공공공지	만수동 1052	-	증)769 (635)	769 (635)	※ 지구외:134㎡

※ ()는 구역 내 면적임

○ 공공공지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공공공지	• 신설 - 면적 : 456㎡	• 담방문화공원과 구청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이용 자의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②	공공공지	• 신설 - 면적 : 769㎡ (지구내 : 635㎡) (지구외 : 134㎡)	• 담방문화공원과 구청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이용 자의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변경 없음)

(1) 학교 (변경 없음)

○ 학교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59	남동중학교	중학교	만수동 1047번지	11,075	
기정	104	담방초등학교	초등학교	만수동 1046번지	11,234	
기정	105	남동초등학교	초등학교	만수동 1017번지	11,450	
기정	1	만수초등학교	초등학교	만수동 1074번지	12,155.3	
기정	2	인천청선학교	특수학교	만수동 1007-5번지	11,089.5	

(2) 공공청사 (변경 없음)

○ 공공청사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30	파출소	공공청사	만수동 1019-2	358	
기정	31	우체국	공공청사	만수동 1019-3	566	
기정	32	동사무소	공공청사	만수동 1020	887	
기정	33	소방파출소	공공청사	만수동 1049-2	1,048	
기정	34	남동구청	공공청사	만수동 1008	27,911	
기정	1	도시개발본부	공공청사	만수동 1090	6,021.2	

(3) 사회복지시설 (변경 없음)

○ 사회복지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4	남 동 구 장애인복지관	만수동 1007번지, 만수동 1085-6번지	1,869.2	

라) 환경기초시설 (변경 없음)

(1) 하수도 (변경 없음)

○ 하수도 결정 조서

구분	도 표시번호	면 적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1		만수중계 펌프장	하수도	만수동 1008-1번지	1,980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 (변경 없음)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 조서 (변경 없음)

가구번호	면적	획지수	용도	비고
1	1,621.6	6	B	제2종일반주거지역
2	4,853.1	18	B	제2종일반주거지역
3	7,919.7	6	B	제2종일반주거지역
1079-2	3,560.1	1	C-1	제3종일반주거지역
1014-2	322.3	1	C-1	제3종일반주거지역
4	2,291.2	10	B	제2종일반주거지역
5	1,847.0	11	B	제2종일반주거지역
6	3,288.8	18	A	제1종일반주거지역
7	3,012.1	18	A	제1종일반주거지역
8	793.4	4	A	제1종일반주거지역
9	789.4	4	A	제1종일반주거지역
10	3,160.0	16	A	제1종일반주거지역
11	3,263.0	16	A	제1종일반주거지역
12	3,430.1	21	A	제1종일반주거지역
13	3,717.0	20	A	제1종일반주거지역
14	3,884.9	12	B	제2종일반주거지역
15	2,673.0	12	B	제2종일반주거지역
16	1,291.7	2	B	제2종일반주거지역
17	280.2	8	B	제2종일반주거지역
18	1,802.3	8	B	제2종일반주거지역
19	3,380.1	12	B	제2종일반주거지역
20	1,752.2	6	B	제2종일반주거지역
21	4,016.9	13	B	제2종일반주거지역
22	543.1	2	B	제2종일반주거지역
22-1	229.2	1	종교시설	제2종일반주거지역
23	814.7	5	B	제2종일반주거지역
24	2,422.8	14	A	제1종일반주거지역
25	2,429.1	14	A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구번호	면적(㎡)	획지수	용도	비고
26	4,442.4	21	B	제2종일반주거지역
27	500.1	2	B	제2종일반주거지역
28	3,504.7	15	B	제2종일반주거지역
29	3,390.4	10	B	제2종일반주거지역
30	2,686.7	9	B	제2종일반주거지역
31	3,963.8	10	B	제2종일반주거지역
32	2,491.7	2	B	제2종일반주거지역
33	4,933.2	14	B	제2종일반주거지역
34	13,063.4	3	C-2	제3종일반주거지역
35	1,035.6	4	B	제2종일반주거지역
36	2,892.7	8	B	제2종일반주거지역
37	1,213.3	1	B	제2종일반주거지역
38	1,611.3	7	B	제3종일반주거지역
1085-7	2,563.3	1	C-1	제3종일반주거지역
1085-6	525.6	1	사회복지시설	제3종일반주거지역
39	3,577.3	13	B	제2종일반주거지역
40	3,143.3	2	B	제2종일반주거지역
41	2,440.3	2	B	제2종일반주거지역
42	3,144.7	11	B	제2종일반주거지역
43	2,249.0	9	B	제2종일반주거지역
44	1,720.2	9	B	제2종일반주거지역
45	6,476.7	8	B	제2종일반주거지역
48	1,520.9	2	D	준주거지역
49	575.3	4	D	준주거지역
50	3,685.1	6	D	준주거지역
1019-2	357.7	1	공공청사	준주거지역
1019-3	565.7	1	공공청사	준주거지역
51	3,244.2	5	D	준주거지역
1020	887.5	1	공공청사	준주거지역
52	3,753.2	8	D	준주거지역
53	3,753.2	7	D	준주거지역
54	3,234.1	7	D	준주거지역
55	3,535.1	8	D	준주거지역

가구번호	면적(㎡)	획지수	용도	비고
56	1,048.3	1	공공청사	제3종일반주거지역
57	27,911.4	1	공공청사	제2종일반주거지역
58	1,343.6	1	사회복지시설	제2종일반주거지역
59	864.0	1	종교시설	제2종일반주거지역
60	5,510.8	2(필지)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제2종일반주거지역
62	6,021.2	1	공공청사	제2종일반주거지역
63	22,951.0	1	C-2	제3종일반주거지역
64	27,017.8	1	C-1	제3종일반주거지역
65	23,140.3	1	C-2	제3종일반주거지역
66	30,136.9	3	C-1	제3종일반주거지역
67	30,792.9	1	C-1	제3종일반주거지역
68	24,120.5	1	C-2	제3종일반주거지역
69	15,574.9	1	C-1	제3종일반주거지역
70	22,644.1	1	C-1	제3종일반주거지역
71	21,680.5	1	C-2	제3종일반주거지역
72	13,977.2	1	C-2	제3종일반주거지역
73	31,180.0	1	C-2	제3종일반주거지역
74	685.0	3	B	제2종일반주거지역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 조서 (변경 없음)

가) A용도

도면번호	획지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6	전체(1~18)	용 도	○ 단독주택
7	전체(1~18)	건폐율	○ 60% 이하
8	전체(1~4)	용적률	○ 200% 이하
9	전체(1~4)	높 이	○ 3층 이하
10	전체(1~16)	형 태	○ 별표2
11	전체(1~16)	배 치	○ 별표3
12	전체(1~21)	색 채	○ 별표4
13	전체(1~20)		
24	전체(1~14)		
25	전체(1~14)		

나) B용도

도면번호	획지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1	전체 (1~ 6)	용 도	○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
2	전체 (1~158)	건 폐 율	○ 60% 이하
3	전체 (1~ 8)		
4	전체 (1~10)	B	○ 50% 이하
5	전체 (1~13)		
14	전체 (1~12)	B-1	○ 250% 이하
15	전체 (1~13)		
16	전체 (1~ 2)	용 적 률	○ 250% 이하
17	전체 (1~ 8)		
18	전체 (1~ 8)	B	○ 6층 이하
19	전체 (1~11)		
20	전체 (1~ 6)	B-1	-
21	전체 (1~11)		
22	전체 (1~ 2)	높 이	○ 별표2
23	전체 (1~ 5)		
26	전체 (1~16)	B-1	○ 별표3
27	전체 (1~ 2)		
28	전체 (1~12)	B	○ 별표4
29	전체 (1~10)		
30	전체 (1~10)	B-1	
31	전체 (1~10)		
32	전체 (1)	형 태	○ 별표2
33	전체 (1~12)		
35	전체 (1~ 3)	배 치	○ 별표3
36	전체 (1~ 7)		
37	전체 (1)	색 채	○ 별표4
39	전체 (1~12)		
40	전체 (1~ 2)	높 이	○ 별표2
41	전체 (1~ 2)		
42	전체 (1~11)	배 치	○ 별표3
43	전체 (1~ 9)		
44	전체 (1~ 9)	색 채	○ 별표4
45	전체 (1~12)		
74	전체 (1~ 3)	형 태	○ 별표2
<B-1>38	전체 (1085-7제외)		

다) C용도

도면번호	획지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C-1>			
3	1079-1	용 도	○ 아파트
38	1014-2	건폐율	○ 30% 이하
64	1085-7		
66	전체 (1)	용적률	○ 250% 이하
67	전체 (1~3)		
69	전체 (1)	높 이	○ 15층 이하
70	전체 (1)		○ 16~21층 이하
<C-2>			
34	전체 (1~3)		
63	전체 (1)	형 태	○ 별표2
65	전체 (1)		
68	전체 (1)	배 치	○ 별표3
71	전체 (1)		
72	전체 (1)	색 채	○ 별표4
73	전체 (1)		

라) D용도

도면번호	획지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48	전체(1~2)	용 도	○ 제1·2종근린생활시설 등
49	전체(1~4)	건폐율	○ 60% 이하
50	전체(1~6)	용적률	○ 350% 이하
51	전체(1~5)	높 이	○ 10층 이하
52	전체(1~8)	형 태	○ 별표2
53	전체(1~7)	배 치	○ 별표3
54	전체(1~7)		
55	전체(1~8)	색 채	○ 별표4

마) 공공청사 등(구청, 소방서, 동사무소, 우체국,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업무시설 등)

도면번호	획지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22-1	전체 (1)	종교시설	용 도 ○ 공공청사 등
50	1019-2,	파출소,	건폐율 ○ 60% 이하
51	1019-3	우체국	
56	1020	동사무소	용적률 ○ 200% 이하
57	전체 (1)	소방서	높 이 ○ 6층 이하
58	전체 (1)	남동구청	
58	1007,	사회복지시설	형 태 -
59	1085-6		
59	전체(1)	종교시설	배 치 ○ 별표3
60	1007-8,	업무시설,	
62	1007-9	교육연구시설	색 채 ○ 별표4
	전체 (1)	도시개발본부	

바) 학교

도면번호	획지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	만수동 1047	남동중학교	용 도 ○ 학교
			건폐율 ○ 30%이하
	만수동 1046	담방초등학교	용적률 ○ 150%이하
	만수동 1017	남동초등학교	높 이 ○ 5층 이하
	만수동 1074	만수초등학교	형 태 -
			배 치 ○ 별표3
	만수동 1007-5	인천청선학교	색 채 ○ 별표4

사) 건축물의 용도·형태·배치·색채 등에 관한 계획 : (별표참조)

【 별표1】 건축물 용도 분류표

【 별표2】 건축물의 형태 분류표

【 별표3】 건축물의 배치 분류표

【 별표4】 건축물의 색채 분류표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 : 별표참조 (변경없음)

【 별표5】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별표6】 도시계획도로에 관한 계획

【 별표7】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별표1】 건축물 용도 분류표

구분	허용용도	비고
A 용도	○ 단독주택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아래시설만 허용 - 일반음식점, 기원, 휴게음식점, 당구장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 게임제공업소, 사진관, 표구점 - 학원(예능계, 기술계), 독서실 - 노래연습장(지상층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중 종교집회장(타종 및 확장장치가 없는 것에 한함) ○ 교육 및 복지시설 중 학교(초·중·고교),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B 용도	○ 단독주택 ○ 공동주택(연립, 다세대)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골프연습장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중 종교집회장(타종 및 확장장치가 없는 것에 한함) ○ 교육 및 복지시설 중 학교(초·중·고교),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C 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 부대시설 - 복리시설	
D 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골프연습장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중 종교집회장(타종 및 확장장치가 없는 것에 한함) ○ 판매 및 영업시설중 소매시장, 상점, 게임제공업소 ○ 의료시설중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교육 및 복지시설 중 학교(초·중·고교),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 업무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 운동시설(육상장, 구기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연습장, 골프장 제외)	

【별표2】 건축물 형태 분류표

용 도	도면표시 (가구번호)	건축물의 형태
공동 주택 용지	3 1009-2 1014-2 34(1~3) 38(1085-7) 63(1) 64(1) 65(1) 66(3) 67(1) 68(1) 69(1) 70(1) 71(1) 72(1) 73(1)	○ 아파트 1동의 전면길이는 시각적 개방감 부여 및 심리적 중압감 배제 등을 위해 주동의 최대길이를 80m 이내로 제한 ※ 주동길이라 함은 수직면에 수평투영한 길이 중 최대길이를 말함. “ㄱ, ㄴ 자 형태의 아파트 주동길이는 가장 거리가 먼 외벽 대각선의 길이를 말함 ○ 아파트의 지붕형태는 경사지붕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기타 우수 디자인 형태로 채택된 지붕은 허가권자의 결정을 따르도록 함 ※ 경사지붕이라 함은 건축물 지붕면적의 70% 이상을 경사지붕으로 설치한 지붕을 말함 - 경사지붕 설치시 옥상의 설비기기 등 경관불량요소는 건축물 전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
단독, 다세대, 연립 주택 용지	1(1~6) 2(1~18) 3(1~6) 4(1~10) 5(1~11) 6(1~18) 7(1~18) 8(1~4) 9(1~4) 10(1~16) 11(1~16) 12(1~21) 13(1~20) 14(1~12) 15(1~12) 16(1~2) 17(1~8) 18(1~8) 19(1~12) 20(1~6) 21(1~13) 22(1~2) 23(1~5) 24(1~14) 25(1~14) 26(1~21) 27(1~2) 28(1~15) 29(1~10) 30(1~9) 31(1~10) 32(1~2) 33(1~14) 35(1~4) 36(1~7) 37(1) 38(1~8) 39(1~13) 40(1~2) 41(1~2) 42(1~11) 43(1~9) 44(1~9) 45(1~8) 74(1~3)	○ 지붕의 형태는 경사지붕을 설치토록 하며, 경사지붕의 구배는 3/10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함 ※ 경사지붕이라 함은 건축물 지붕면적의 70% 이상을 경사지붕으로 설치한 지붕을 말함 ○ 옥상의 이용 - 옥상부분의 옥외창고로의 이용 규제 및 물건을 그대로 방치하지 못하게 함 - 부득이 옥상을 야적장으로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지상에서 보이지 않게 하고, 주변 고층 건물에서 보이지 않도록 간이지붕 설치 ○ 건축물의 외벽은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3면 이상의 벽면에서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함 ○ 건축물 구조는 조립식 경량철골조, 무피복철골조, 컨테이너 등의 구조를 제한하여 가로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함.(단, 조립식 경량 철골조는 가로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 도시계획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허가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가설 건축물에 한하여 준공 전까지 허용함) ○ 간선가로변에 면한 건축물은 1층 외벽면의 50%이상을 투시형으로 설치(권장사항) ○ 건축물의 서터는 투시형으로 하여 야간의 가로조면과 가로미관 개선에 기여하도록 유도 ○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1층 바닥 마감 높이와 도로마감 높이와의 차이는 15cm이하로 하여 보행자의 접근을 강화토록 함
준주거 용지	48(1~2) 49(1~4) 50(1~6) 51(1~5) 52(1~8) 53(1~7) 54(1~7) 55(1~8)	

【별표3】 건축물 배치 분류표

용도	도면표시 (가구번호)	건축물의 형태
공동 주택 용지	3 1079-2 1014-2 34(1~3) 38(1085-7) 63(1) 64(1) 65(1) 66(1-3) 67(1) 68(1) 69(1) 70(1) 71(1) 72(1) 73(1)	- 아파트의 배치는 주민의 프라이버시 침해나 밀폐감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형태로 배치토록 권장 - 아파트의 층수는 변화 있는 층수배치로 경관 및 식별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권장 - 블록 외곽도로에 면한 단지의 경계부에 단지의 관리와 안전을 위해 담장을 설치토록 하며 담장의 형태는 높이 1.2m 이하의 투시형 담장이거나 생울타리 담장을 설치
	1(1-6) 2(1-18) 3(1-6) 4(1-10) 5(1-11) 6(1-18) 7(1-18) 8(1-4) 9(1-4) 10(1-16) 11(1-16) 12(1-21) 13(1-20) 14(1-12) 15(1-13) 16(1-2) 17(1-8) 18(1-8) 19(1-12) 20(1-6) 21(1-13) 22(1-2) 23(1-5) 24(1-14) 25(1-14) 26(1-21) 27(1-2) 28(1-15) 29(1-10) 30(1-9) 31(1-10) 32(1-2) 33(1-14) 35(1-4) 36(1-7) 37(1) 38(1-8) 39(1-13) 40(1-2) 41(1-2) 42(1-11) 43(1-9) 44(1-9) 45(1-8) 74(1-3)	- 건축물 전면은 환경적(일조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도록 함 - 중로이상 도로변에 면한 건축물은 코아 부분의 벽면 또는 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가로에 노출하여서는 안됨 - 단, 벽면에 조경, 벽화 등 장식처리를 하여 도시민관에 기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담장 설치시 높이 1.2m 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담장으로 설치토록 함
	48(1-2) 49(1-4) 50(1-6) 51(1-5) 52(1-8) 53(1-7) 54(1-7) 55(1-8)	
	22-1(1) 38(1085-6) 50 1019-2 1019-3 51(1020) 56(1) 57(1) 58(1) 60(1) 62(1)	- 건축물 전면은 환경적(일조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도록 함 - 담장 설치시 높이 1.2m 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담장으로 설치토록 함
	1047 1046 1017 1074 1007-5	담장 설치시 높이 1.2m 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담장으로 설치토록 함
	59(1)	

【별표4】 건축물의 색채 분류표

용도	도면표시 (가구번호)	건축물의 형태
공동 주택 용지	3 1079-2 1014-2 34(1~3) 38(1085-7) 63(1) 64(1) 65(1) 66(1-3) 67(1) 68(1) 69(1) 70(1) 71(1) 72(1) 73(1)	- Landmark 기능 및 단지내 쾌적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명량한 색조 계열 사용 - 주변의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베이지, 연한연두, 연한노랑, 등의 부담없고 친근한 색을 보조색으로 사용토록 권장 - 옥탑 및 기타 부속 건축물 녹색계통 위주의 자연친화적인 색채 사용 권장 - 옥외가로서시설물의 형태 및 색채 등 본 계획에서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인천시 도시개성창조사업(C.I.P) 운용관리지침의 기준을 준용토록 함 - 가로시설물, 안내판, 옥외광고물, 표지판 등의 도시개성과 관련한 일체화된 디자인 계획
	1(1-6) 2(1-18) 3(1-6) 4(1-10) 5(1-11) 6(1-18) 7(1-18) 8(1-4) 9(1-4) 10(1-16) 11(1-16) 12(1-21) 13(1-20) 14(1-12) 15(1-13) 16(1-2) 17(1-8) 18(1-8) 19(1-12) 20(1-6) 21(1-13) 22(1-2) 23(1-5) 24(1-14) 25(1-14) 26(1-21) 27(1-2) 28(1-15) 29(1-10) 30(1-9) 31(1-10) 32(1-2) 33(1-14) 35(1-4) 36(1-7) 37(1) 38(1-8) 39(1-13) 40(1-2) 41(1-2) 42(1-11) 43(1-9) 44(1-9) 45(1-8) 74(1-3)	- 원색의 사용을 금하며(강조색은 가능) 저채도 색채를 사용 - 건축물의 좌우배면은 전면색채와 동일계통의 색채를 사용 - 검정색 계통의 외벽마감재료 사용을 금지하여, 밝고 명량한 분위기의 도시경관 형성(단, 강조색은 가능) - 옥탑 및 기타 부속 건축물 녹색계통 위주의 자연친화적인 색채 사용 권장 - 옥외가로서시설물의 형태 및 색채 등 본 계획에서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인천시 도시개성창조사업(CIP) 운용관리지침의 기준을 준용토록 함 - 가로시설물, 안내판, 옥외광고물, 표지판 등의 도시개성과 관련한 일체화된 디자인 계획
	48(1-2) 49(1-4) 50(1-6) 51(1-5) 52(1-8) 53(1-7) 54(1-7) 55(1-8)	
	22-1(1) 38(1085-6) 50 1019-2 1019-3 51(1020) 56(1) 57(1) 58(1) 60(1) 62(1)	- 색채의 분류 - 색채의 분류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등 3가지로 분류하며, 이들 색채의 적절한 사용을 통하여 다양하면서도 통일감 있는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함 - 주조색 : 대상지내 건축물의 도로변에 접하는 가장 잘 보이는 면에 배색되어 시각적 인상을 결정하는 색으로서 외벽면적의 70%이상을 차지 - 보조색 : 주조색보다 좁은 면적에 배색되어 주조색과 조화를 이루면서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어 전체적인 변화를 주는 색으로서 외벽면적의 10~30%를 차지 - 강조색 : 건축물의 선이나 점같이 매우 좁은 면의 특히 강조할 곳에 배색되어 주조색이나 보조색과 강한 대비를 이루면서 전체에 활력을 주고 변화를 주는 색이며 외벽면적의 10%미만을 차지
	1047 1046 1017 1074 1007-5	
	59(1)	

【별표5】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용도	도면표시 (가구번호)	건축물의 형태	
공동 주택 용지	1079-2 3 1014-2 34(1-3) 38(1085-7)	차량 동선	○ 단지 내 차량동선은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보행자 동선과의 상충 최소화 ○ 원활한 진출입이 이루어지도록 진출입구는 외곽도로와 직각교차되도록 하며, 교차부에서 30m이상 이격하여 배치될 수 있도록 교차부의 30m 이내 구간은 차량의 출입을 금지토록 함(권장사항)
	63(1) 64(1) 65(1) 66(1-3) 67(1) 68(1)	주차 시설	○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은 주차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주차시설 설치(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제시한 설치기준 적용) ○ 지상주차장은 자연친화적인 공원조성(권장사항)
	69(1) 70(1) 71(1) 72(1) 73(1)	단지 내 조경	○ 대지안의 조경은 대지면적의 15%이상 확보(권장사항) ○ 단지내 조형물 설치 ○ 단지입구 부분에 단지 종합안내판 설치 ○ 조경수는 인천시의 시화인 장미 또는 남동구의 구화인 개나리 등을 포함한 식재 권장, 투시형 담장인 경우 넝쿨 장미의 식재 권장
	1(1-6) 2(1-18) 3(1-6) 4(1-10) 5(1-11) 6(1-18) 7(1-18) 8(1-4) 9(1-4) 10(1-16)	차량 동선	○ 개별필지의 진출입은 연결 도로중 폭이 좁은 도로에서의 진출입 권장 ○ 차량출입불허구간(권장사항) - 교차로 측단,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육교 등으로부터 10m이내 구간(단, 필지의 규모가 협소하여 차량출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
	11(1-16) 12(1-21) 13(1-20) 14(1-12) 15(1-13) 16(1-2) 17(1-8) 18(1-8) 19(1-12) 20(1-6) 21(1-13) 22(1-2)	주차 시설	○ 법정규모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주거용 건축물은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면수 확보(권장사항) ○ 공동으로 주차출입구 설치시 대지경계선에서 양측으로 각각 3m 이상 확보 ○ 대상 부지가 2개 이상의 도로에 면한 경우 폭이 좁은 도로에 주차 통로 설치
단독, 다세대, 연립 주택 용지	23(1-5) 24(1-14) 25(1-14) 26(1-21) 27(1-2) 28(1-15) 29(1-10) 30(1-9) 31(1-10) 32(1-2) 33(1-14) 35(1-4)	전면 공지	○ 건축선 후퇴로 생기는 전면공지에는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며, 인접보도와 같은 높이로 조성 ○ 전면공지에는 주차시설과 보행접근성을 저해하는 지하 환기구, 쓰레기 적치장 등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음 ○ 전면공지(보도)에는 보행통행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식수, 벤치 등의 휴게시설과 조명, 장식시설 등의 설치 권장
	36(1-7) 37(1) 38(1-8) 39(1-13) 40(1-2) 41(1-2) 42(1-11) 43(1-9) 44(1-9) 45(1-8) 74(1-3)	대지 안의 조경	○ 단독주택지(C용도)는 대지면적의 10% 이상을 조경면적으로 확보 (권장사항) ○ 조경수는 인천시의 시화인 장미 또는 남동구의 구화인 개나리 등을 포함한 식재 권장

용도	도면표시 (가구번호)	건축물의 형태	
준주거 용지	48(1-2) 49(1-4) 50(1-6) 51(1-5) 52(1-8) 53(1-7) 54(1-7) 55(1-8)	차량 동선	○ 개별필지의 진출입은 연결 도로중 폭이 좁은 도로에서의 진출입 권장 ○ 차량출입불허구간(권장사항) - 대3-31호선에서 차량 진출입 금지 - 교차로 측단,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육교 등으로부터 10m이내 구간(단, 필지의 규모가 협소하여 차량출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
		주차 시설	○ 법정규모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주거용 건축물은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면수 확보(권장사항) ○ 공동으로 주차출입구 설치시 대지경계선에서 양측으로 각각 3m 이상 확보 ○ 대상 부지가 2개 이상의 도로에 면한 경우 폭이 좁은 도로에 주차 통로 설치
학교	1047 1046 1017 1074 1007-5	전면 공지	○ 건축선 후퇴로 생기는 전면공지에는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며, 인접보도와 같은 높이로 조성 ○ 전면공지에는 주차시설과 보행접근성을 저해하는 지하 환기구, 쓰레기 적치장 등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음 ○ 전면공지(보도)에는 보행통행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식수, 벤치 등의 휴게시설과 조명, 장식시설 등의 설치 권장
		대지 안의 조경	○ 조경수는 인천시의 시화인 장미 또는 남동구의 구화인 개나리 등을 포함한 식재 권장
기타 공공 시설	59(1)		
공공 청사		차량 동선	○ 개별필지의 진출입은 연결 도로 중 폭이 좁은 도로에서의 진출입 권장 ○ 차량출입불허구간(권장사항) - 대3-31호선에서 차량 진출입 금지 - 교차로 측단,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육교 등으로부터 10m이내 구간(단, 필지의 규모가 협소하여 차량출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
	22-1(1) 38(1085-6) 50 1019-2 1019-3 51(1020)	주차 시설	○ 법정규모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주거용 건축물은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면수 확보(권장사항) ○ 공동으로 주차출입구 설치시 대지경계선에서 양측으로 각각 3m 이상 확보 ○ 대상 부지가 2개 이상의 도로에 면한 경우 폭이 좁은 도로에 주차 통로 설치
	56(1) 57(1) 58(1) 60(1) 62(1)	전면 공지	○ 건축선 후퇴로 생기는 전면공지에는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며, 인접보도와 같은 높이로 조성토록 유도 ○ 전면공지에는 주차시설과 보행접근성을 저해하는 지하 환기구, 쓰레기 적치장 등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음 ○ 전면공지(보도)에는 보행통행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식수, 벤치 등의 휴게시설과 조명, 장식시설 등의 설치 권장
		대지 안의 조경	○ 조경수는 인천시의 시화인 장미 또는 남동구의 구화인 개나리 등을 포함한 식재 권장

※ ()의 숫자는 획지 수 또는 필지 지번임

【별표6】 도시계획도로에 관한 계획

용도	도면 표시	기타사항	
도시 계획 도로	도시 계획 도로	가 로 시 설 물	- 보행활동중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중 위험 발생 가능성 최소화 - 가로시설물의 형태, 크기, 배치, 구조 및 재료는 주위환경과 어울리도록 설계 - 보행인이나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계획하고, 특히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 대중 인식도가 높은 옥외시설물 또는 안내판 등의 시설물은 지역적 특성을 살린 디자인을 도입하여 설치 - 꼭 필요한 곳에만 적절한 수량으로 설치토록 유도 - 상호보완적 가로시설물을 집합시켜 여러 기능을 갖도록 설계 - 형태 상호간에 통일성 있고 시각적으로 아름답게 하여 가로를 장식할 수 있도록 설계
		식재	- 지구내의 미려한 가로경관을 위한 지역 특성 및 계절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수종을 선택 하여 지역별, 가로별로 특징적 경관을 연출하도록 식재 - 인천시의 시목인 목백합 또는 남동구의 구목인 은행나무 등의 식재 유도 - 차도로부터 0.5m, 건물외벽으로부터 2-3m 이상 떨어져 식재 - 가로수의 식재간격 6-8m를 기준으로 함 - 도로 교차점 주변은 운전자의 가시거리 확보를 위해 좌우 20m의 구간내에 수목의 식재 금지
		포장	-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 변화가 적고 보수가 용이하며 차량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내구성 재료 사용 - 재료는 아스팔트 및 유색아스팔트 사용 - 보도 - 보행의 지루함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패턴 - 포장구획을 소단위로 하여 친근감 유지 - 재료는 소형고압블럭을 원칙으로 하되, 우수 디자인 형태로 채택된 것은 허가권자의 결정에 따르도록 함 - 연석 - 횡단로 등에서는 경사면으로 처리 - 재료는 화강석(인조화강석)등 차량에 의해 파손되지 않는 재료 사용
		조명 시설	- 가로등 - 도로의 교통량, 도로폭, 바닥포장의 재질, 건축물의 재질(반사정도) 등을 고려하여 높이, 위치, 밝기 등을 조절 - 보행등 - 연속적으로 일정한 조도를 유지하도록 하며, 보도폭 전체에 빛이 닿도록 계획
		기타 사항	육교, 계단, 경사로의 설치 및 조명시설, 옥외가로시설물 등 본 계획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반관련규정의 기준을 준용토록 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도로구조령의 도로 조명 시설기준, 옥외광고물 관리법, 인천시 C·I·P 기준 등)

【별표7】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 ① 1개 업소의 간판 총 수량은 2개 이내, 단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3개 이내로 표시
- ② 한 건물내 같은층에 설치되는 가로형간판의 세로폭은 동일하게 표시, 가로폭은 점포점유 가로폭 이내로 설치, 다만, 입체형·조각형은 예외
- ③ 건물정면에 부착하는 판류형 가로형간판의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세로(벽면) 폭의 80% 이내. 다만, 층간 벽면높이가 1m미만인 경우에는 창문을 가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치
- ④ 세로형간판은 부착금지. 다만, 건물정면의 주 출입구(주 계단입구) 기둥양측 1곳에 한하여 건물명이나 비영리단체의 명칭에 한하여 비조명으로 설치하는 경우만 허용
- ⑤ 1개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점포가 있는 경우 1개의 지주를 이용한 종합간판(종합사인보드) 만 허용
- ⑥ 광고물 등의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 사용을 2분의 1이내 이어야 한다. 다만,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로의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 ⑦ 돌출간판은 상·하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표시하되, 세로폭을 제외한 가로폭·돌출·두께가 동일하여야 하며, 건물의 양쪽 끝부분에만 설치 가능. 다만, 건물전면폭이 10m이하인 경우 한쪽 끝에만 설치
- ⑧ 옥상간판·네온 및 전광류 사용금지. 단, 의료기관 약국은 제외
- ⑨ 기타사항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동법시행령 및 인천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 의한다.
- ⑩ 고시일 현재 적법한 철차를 거쳐 설치한 광고물은 당해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표시하며, 상호변경에 의한 표시내용 변경시에는 동 규정을 적용한다.

III.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고 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시 제2019-125호

도시관리계획(소래논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소래논현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과,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 (☎453-295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9. 9. 27.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I. 결정(변경)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마목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II.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767-4번지 일원

III. 도시관리계획(소래·논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 없음)
 -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도 표 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적(㎡)	최 결 정 일	비고
-	소래·논현 도시개발구역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767-4번지 일원	2,376,437	2006.05.08	

2.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

-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 (변경)

1)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 조서 (변경 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2,376,437	100.0	
주거 지역	소 계	1,145,367	48.2	
	제1종일반주거지역	34,554	1.4	
	제2종일반주거지역	187,441	7.9	
	제3종일반주거지역	824,456	34.7	
	준주거지역	98,916	4.2	
상업 지역	소 계	111,153	4.7	
	일반상업지역	111,153	4.7	
녹지 지역	소 계	1,119,917	47.1	
	자연녹지지역	1,119,917	47.1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 조서 (변경)

가) 교통시설 (변경 없음)

(1) 도로 (변경 없음)

○ 도로 총괄표

구 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기정	합계	46	15,991	326,454	22	8,616	151,210	17	5,425	128,712	7	1,950	46,523
기정	광로	1	360	15,759	-	-	-	-	-	-	1	360	15,759
기정	대로	3	2,993	90,341	-	-	-	1	1,949	63,989	2	1,044	26,352
기정	중로	28	10,254	196,096	8	6,232	126,961	16	3,476	64,723	4	546	4,412
기정	소로	14	2,384	24,249	14	2,384	24,249	-	-	-	-	-	-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시 점	중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3	28	40	보조 간선	485 (360)	광3-14	대2-75	일반 도로	-	인고 제2002-31호	
기정	대로	2	75	30	보조 간선	2,830 (1,949)	대2-44	대2-1	일반 도로	-	인고 제2006-133호	
기정	대로	3	98	25	보조 간선	529	대2-75	중1-302	일반 도로	-	인고 제2006-133호	
기정	대로	3	99	25	보조 간선	515	대2-75	중1-302	일반 도로	-	인고 제2006-133호	
기정	중로	1	294	20 (15)	집산 도로	486.5 (470)	광3-28	소1-9	일반 도로	-	인고 제2006-133호	
기정	중로	1	309	23	보조 간선	362	중1-310	대2-75	일반 도로	-	인고 제2008-331호	
기정	중로	1	310	22	보조 간선	129	대3-99	완6	일반 도로	-	인고 제2008-331호	
기정	중로	1	302	20	보조 간선	2,287	광3-34	소1-20	일반 도로	-	인고 제2006-133호	
기정	중로	1	303	20	보조 간선	1,770 (1,468)	중1-304	대3-75	일반 도로	-	인고 제2006-133호	
기정	중로	1	304	20	보조 간선	557	대2-75	중1-302	일반 도로	-	인고 제2006-133호	
기정	중로	1	305	20	보조 간선	731 (543)	중2-434	대2-75	일반 도로	-	인고 제2006-133호	
기정	중로	1	306	20	보조 간선	416	대3-98	중1-304	일반 도로	-	인고 제2006-133호	
기정	중로	2	427	15	집산 도로	979	중1-303	중2-430	일반 도로	-	인고 제2006-133호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시 점	중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428	15	집산 도로	139	중1-303	중2-427	일반 도로	-	인고 제2006-133호	
기정	중로	2	429	15	집산 도로	259	중1-303	중2-427	일반 도로	-	인고 제2006-133호	
기정	중로	2	430	15	집산 도로	341	중1-302	중1-303	일반 도로	-	인고 제2006-133호	
기정	중로	2	431	15	집산 도로	121	중1-303	근4	일반 도로	-	인고 제2006-133호	
기정	중로	2	432	15	집산 도로	106	중1-303	근1	일반 도로	-	인고 제2006-133호	
기정	중로	2	433	15	집산 도로	107	중1-305	근1	일반 도로	-	인고 제2006-133호	
기정	중로	2	434	15	집산 도로	599	대2-75	중1-305	일반 도로	-	인고 제2006-133호	
기정	중로	2	435	15	집산 도로	48	중3-232	중2-434	일반 도로	-	인고 제2006-133호	
기정	중로	2	448	15	집산 도로	240	문화시설1	대3-75	일반 도로	-	인고 제2006-133호	
기정	중로	2	449	15	집산 도로	85	광3-28	중2-434	일반 도로	-	인고 제2008-331호	
기정	중로	2	453	15	특수 도로	42	광3-28	중2-435	보행자	-	인고 제2008-331호	
기정	중로	2	454	15	집산 도로	72	중2-457	소1-12	일반 도로	-	인고 제2006-133호	
기정	중로	2	455	15	집산 도로	238	중2-449	중2-434	일반 도로	-	인고 제2008-331호	
기정	중로	2	456	15	집산 도로	55	중2-455	소1-12	일반 도로	-	인고 제2008-331호	
기정	중로	2	457	15	집산 도로	45	중2-455	중2-454	일반 도로	-	인고 제2008-331호	
기정	중로	3	227	12	집산 도로	19	대2-75	쓰레기 집하장	일반 도로	-	인고 제2006-133호	
기정	중로	3	232	12	집산 도로	210	중2-435	중2-449	일반 도로	-	인고 제2006-133호	
기정	중로	3	236	12	집산 도로	191	중1-310	중1-310	일반 도로	-	인고 제2008-331호	
기정	중로	3	237	12	집산 도로	126	중1-310	대3-99	일반 도로	-	인고 제2008-331호	
기정	소로	1	1	10	국지 도로	303	중2-432	중2-432	일반 도로	-	인고 제2006-133호	
기정	소로	1	2	10	국지 도로	292	중2-432	중2-432	일반 도로	-	인고 제2006-133호	
기정	소로	1	3	10	특수 도로	236	대2-75	중1-303	보행자	-	인고 제2006-133호	
기정	소로	1	4	10	특수 도로	117	중1-303	근4	보행자	-	인고 제2006-133호	
기정	소로	1	5	10	국지 도로	168	소1-7	소1-7	일반 도로	-	인고 제2006-133호	
기정	소로	1	6	10	국지 도로	36	소1-5	소1-7	일반 도로	-	인고 제2006-133호	
기정	소로	1	7	10	국지 도로	299	소1-5	중1-303	일반 도로	-	인고 제2006-133호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시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8	10	특수도로	361	대2-75	중1-305	보행자	-	인고 제2006-133호	
기정	소로	1	9	10	특수도로	335	중1-305	중2-434	보행자	-	인고 제2006-133호	
기정	소로	1	10	10	특수도로	92	중2-434	중2-456	보행자	-	인고 제2006-133호	
기정	소로	1	12	10	특수도로	55	중2-456	중2-454	보행자	-	인고 제2006-133호	
기정	소로	1	18	10	국지도로	18	중1-303	소1-5	일반도로	-	인고 제2008-331호	
기정	소로	1	19	10	특수도로	42	광3-28	중3-232	보행자	-	인고 제2008-331호	
기정	소로	1	20	10	특수도로	30	중2-232	중2-434	보행자	-	인고 제2008-331호	

주1) ()의 연장(m)길이는 구역 내 임

(2) 주차장 (변경)

○ 주차장 결정 조서 (변경)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주1	주차장	논현동 773-3	1,444	인고 제2006-133호	
기정	주2	주차장	논현동 754-4	4,280	인고 제2006-133호	
변경	주3	주차장	논현동 754-3	3,718.5		광장1과 중복결정 (이하주차장)
기정	주4	주차장	논현동 750-2	2,581	인고 제2006-133호	
기정	주5	주차장	논현동 749-3	5,162	인고 제2006-133호	
기정	주6	주차장	논현동 744-5	1,305	인고 제2006-133호	
기정	주7	주차장	논현동 742-1	3,159	인고 제2006-133호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주3	주차장	○ 지하주차장 신설 - 위치 : 논현동 754-3 - 면적 : 3,718.5㎡ (광장1과 중복결정)	- 소래포구 방문 관광객으로 인한 주차난 해소

나) 공간시설 (변경)

(1) 공원 (변경 없음)

○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고잔공원	고잔공원	근린공원	고잔동 983	141,092	'66.08.31	
기정	근1	제1호 근린공원	근린공원	논현동 738-8	561,641	인고 제2006-67호	사회복지시설 중복결정
기정	근2	제2호 근린공원	근린공원	논현동 756-5	34,712	인고 제2006-133호	
기정	근3	제3호 근린공원	근린공원	논현동 755-7	10,633	인고 제2006-133호	
기정	근4	제4호 근린공원	근린공원	논현동 763-2	216,492	인고 제2006-133호	
기정	소1	제1호 소공원	소공원	논현동 751-6	6,446	인고 제2008-331호	
기정	어1	제1호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논현동 765-4	1,517	인고 제2006-133호	
기정	어2	제2호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논현동 757-2	1,923	인고 제2006-133호	
기정	어3	제3호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논현동 773-4	1,513	인고 제2006-133호	
기정	어4	제4호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논현동 774-4	1,591	인고 제2006-133호	
기정	어5	제5호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논현동 755-5	1,689	인고 제2006-133호	
기정	어6	제6호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논현동 749-5	3,231	인고 제2006-133호	
기정	어7	제7호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논현동 740-3	1,531	인고 제2006-133호	
기정	어8	제8호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논현동 739-5	8,511	인고 제2006-133호	

(2) 녹지 (변경 없음)

○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 표시번호	면 적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연1		녹지	연결녹지	논현동 762-2	3,080	인고 제2006-133호	
기정	연2		녹지	연결녹지	논현동 767-5	3,504	인고 제2006-133호	
기정	완1		녹지	완충녹지	논현동 760-8	2,653	인고 제2006-133호	
기정	완2		녹지	완충녹지	논현동 759-9	2,502	인고 제2006-133호	
기정	완3		녹지	완충녹지	논현동 773-5	2,245	인고 제2006-133호	
기정	완4		녹지	완충녹지	논현동 774-5	3,734	인고 제2006-133호	
기정	완5		녹지	완충녹지	논현동 755-8	3,458	인고 제2006-133호	
기정	완6		녹지	완충녹지	논현동 750-3	3,461	인고 제2006-133호	
기정	완7		녹지	완충녹지	논현동 749-2	584	인고 제2006-133호	
기정	완8		녹지	완충녹지	논현동 749-4	8,447	인고 제2006-133호	
기정	완9		녹지	완충녹지	논현동 755-6	6,278	인고 제2006-133호	
기정	완10		녹지	완충녹지	논현동 740-5	5,912	인고 제2006-133호	
기정	완11		녹지	완충녹지	논현동 756-6	5,005	인고 제2006-133호	
기정	완12		녹지	완충녹지	논현동 739-6	2,471	인고 제2006-133호	
기정	완13		녹지	완충녹지	논현동 757-3	4,473	인고 제2006-133호	
기정	완14		녹지	완충녹지	논현동 751-5	783	인고 제2008-331호	
기정	완15		녹지	완충녹지	논현동 751-4	1,027	인고 제2008-331호	
기정	완16		녹지	완충녹지	논현동 747-2	429	인고 제2008-331호	
기정	완17		녹지	완충녹지	논현동 745	293	인고 제2008-331호	
기정	완18		녹지	완충녹지	논현동 748	453	인고 제2008-331호	
기정	완19		녹지	완충녹지	논현동 747-3	424	인고 제2009-253호	

(2) 광장 (변경)

○ 광장 결정조서 (변경)

구분	도 표시번호	면 적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변경	광1		광장	일반광장	논현동 754-3	3,718.5	인고 제2006-133호	주3과 중복결정 (지상광장)
기정	광2		광장	교통광장	논현동 750-1	8,010	인고 제2006-133호	

○ 광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광1	광장	- 지하주차장 중복결정 - 면적오기 정정	- 소래포구 방문 관광객으로 인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광장 지하에 주차장 중복결정

다) 유통 및 공급시설 (변경 없음)

(1) 공동구 (변경 없음)

○ 공동구 결정 조서

구분	도 표시번호	면 적	시설명	위 치			연장(km)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기정	공동구1		공동구	대2-75	대2-75	근린공원2	0.895	7,160	인고 제2006-133호	
기정	공동구2		공동구	광3-28	대3-98	어린이공원6	0.260	2,595	인고 제2006-133호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변경 없음)

(1) 학교 (변경 없음)

○ 학교 결정 조서

구분	도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유1	-	유치원	논현동 766-3	1,045	인고 제2006-133호	
기정	유2	-	유치원	논현동 744-3	1,098	인고 제2006-133호	
기정	유3	-	유치원	논현동 738-3	1,983	인고 제2006-133호	
기정	초1	학교	초등학교	논현동 767-3	10,197	인고 제2006-133호	
기정	초2	학교	초등학교	논현동 774-2	10,147	인고 제2008-331호	
기정	초3	학교	초등학교	논현동 755-2	10,484	인고 제2008-331호	
기정	초4	학교	초등학교	논현동 738-5	10,990	인고 제2006-133호	
기정	중1	학교	중학교	논현동 765-2	11,461	인고 제2006-133호	
기정	중2	학교	중학교	논현동 755-3	11,201	인고 제2006-133호	
기정	고1	학교	고등학교	논현동 762-1	12,857	인고 제2006-133호	
기정	고2	학교	고등학교	논현동 767-2	15,394	인고 제2006-133호	
기정	고3	학교	고등학교	논현동 738-4	12,712	인고 제2006-133호	

(2) 공공청사 (변경 없음)

○ 공공청사 결정 조서

구분	도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공1	공공청사	논현동 766-2	1,907	인고 제2006-133호	
기정	공2	공공청사	논현동 773-2	967	인고 제2006-133호	
기정	공3	공공청사	논현동 744-4	1,735	인고 제2006-133호	
기정	공4	공공청사	논현동 739-2	684	인고 제2006-133호	
기정	공5	공공청사	논현동 739-3	1,109	인고 제2006-133호	
기정	공7	공공청사	논현동 756-3	505	인고 제2008-331호	

(3) 문화시설 (변경 없음)

○ 문화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도1	도서관	논현동 739-4	1,933	인고 제2010-225호	
기정	문1	문화시설	논현동 738-1	8,431	인고 제2006-133호	
기정	문2	문화시설	논현동 767-4	10,905	인고 제2006-133호	

(4) 사회복지시설 (변경 없음)

○ 사회복지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사1	사회복지시설	논현동 738-8	1,777	인고 제2013-30호	제1호 근린공원내 중복결정

마) 보건위생시설 (변경 없음)

(1) 종합의료시설 (변경 없음)

○ 종합의료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의1	종합의료시설	논현동 767-1	14,721	인고 제2006-133호	

바) 환경기초시설 (변경 없음)

(1) 하수도 (변경 없음)

○ 하수도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오1	하수도	오수중계 펌프장	논현동 756-2	1,165	인고 제2006-133호	

(2) 폐기물처리시설 (변경 없음)

○ 폐기물처리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쓰1	폐기물 처리시 설	쓰레기 자동집하 장	논현동 738-7	1,603	인고 제2006-133호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 (변경)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 조서 (변경)

가) 단독주택용지 (변경 없음)

○ 단독주택용지 결정계획

가구 번호	도면 번호	면적 (㎡)	획 지		면적(㎡)	비 고
			번 호	위 치		
R1	4,841	-1	논현동 761-9	341	분할, 합병 불허	
		-2	논현동 761-10	347	분할, 합병 불허	
		-3	논현동 761-11	348	분할, 합병 불허	
		-4	논현동 761-12	348	분할, 합병 불허	
		-5	논현동 761-13	348	분할, 합병 불허	
		-6	논현동 761-14	348	분할, 합병 불허	
		-7	논현동 761-1	342	분할, 합병 불허	
		-8	논현동 761-8	342	분할, 합병 불허	
		-9	논현동 761-7	347	분할, 합병 불허	
		-10	논현동 761-6	347	분할, 합병 불허	
		-11	논현동 761-5	347	분할, 합병 불허	
		-12	논현동 761-4	347	분할, 합병 불허	
		-13	논현동 761-3	347	분할, 합병 불허	
		-14	논현동 761-2	342	분할, 합병 불허	
R2	2,878	-1	논현동 760-7	413	분할, 합병 불허	
		-2	논현동 760-6	412	분할, 합병 불허	
		-3	논현동 760-5	413	분할, 합병 불허	
		-4	논현동 760-4	413	분할, 합병 불허	
		-5	논현동 760-3	412	분할, 합병 불허	
		-6	논현동 760-2	412	분할, 합병 불허	
		-7	논현동 760-1	403	분할, 합병 불허	
R3	4,627	-1	논현동 758-9	343	분할, 합병 불허	
		-2	논현동 758-10	333	분할, 합병 불허	
		-3	논현동 758-11	333	분할, 합병 불허	
		-4	논현동 758-12	328	분할, 합병 불허	
		-5	논현동 758-13	327	분할, 합병 불허	
		-6	논현동 758-14	327	분할, 합병 불허	
		-7	논현동 758-1	320	분할, 합병 불허	
		-8	논현동 758-8	343	분할, 합병 불허	
		-9	논현동 758-7	334	분할, 합병 불허	
		-10	논현동 758-6	334	분할, 합병 불허	
		-11	논현동 758-5	328	분할, 합병 불허	
		-12	논현동 758-4	328	분할, 합병 불허	
		-13	논현동 758-3	328	분할, 합병 불허	
		-14	논현동 758-2	321	분할, 합병 불허	
R4	2,779	-1	논현동 759-8	342	분할, 합병 불허	
		-2	논현동 759-7	348	분할, 합병 불허	
		-3	논현동 759-6	348	분할, 합병 불허	
		-4	논현동 759-5	349	분할, 합병 불허	
		-5	논현동 759-4	348	분할, 합병 불허	
		-6	논현동 759-3	348	분할, 합병 불허	
		-7	논현동 759-2	348	분할, 합병 불허	
총 계		-		15,125	-	

나) 연립주택용지 (변경 없음)

○ 연립주택용지 결정계획

가구 번호	도면 번호	면적 (㎡)	획 지		면적(㎡)	비 고
			번 호	위 치		
A2		20,991	-	논현동 739-1	20,991	분할, 합병 불허
A8		39,408	-	논현동 765-1	39,408	분할, 합병 불허
총 계			-		60,399	-

다) 공동주택용지 (변경 없음)

○ 공동주택용지 결정계획

가구 번호	도면 번호	면적 (㎡)	획 지		면적(㎡)	비 고
			번 호	위 치		
A1		34,965	-	논현동 740-1	34,965	분할, 합병 불허
A3		80,312	-	논현동 740-2	80,312	분할, 합병 불허
A4		38,919	-	논현동 749-2	38,919	분할, 합병 불허
A5		67,127	-	논현동 755-1	67,127	분할, 합병 불허
A6		55,725	-	논현동 756-1	55,725	분할, 합병 불허
A7		49,143	-	논현동 757-1	49,143	분할, 합병 불허
A9		76,922	-	논현동 766-1	76,922	분할, 합병 불허
A10		52,270	-	논현동 773-1	52,270	분할, 합병 불허
A11		101,464	-	논현동 774-1	101,464	분할, 합병 불허
A12		82,493	-	논현동 755-4	82,493	분할, 합병 불허
총 계			-		639,340	-

라)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 없음)

○ 근린생활시설용지 결정계획

가구 번호	도면 번호	면적 (㎡)	획 지		면적(㎡)	비 고
			번 호	위 치		
RC1	8,750	-1	논현동 764-1	2,352	RC1-2또는 가구단위 공동개발권장	
		-2	논현동 764-2	2,240	RC1-1또는 가구단위 공동개발권장	
		-3	논현동 764-3	4,158	가구단위 공동개발권장	
RC2	1,327	-1	논현동 768-1	216	RC2-2와 공동개발권장	
		-2	논현동 768-2	222	RC2-1, RC2-3 중 1개 획지와 공동개발권장	
		-3	논현동 768-3	222	RC2-2, RC2-4 중 1개 획지와 공동개발권장	
		-4	논현동 768-4	222	RC2-3, RC2-5 중 1개 획지와 공동개발권장	
		-5	논현동 768-5	222	RC2-4, RC2-6 중 1개 획지와 공동개발권장	
		-6	논현동 768-6	223	RC2-5와 공동개발권장	
		RC3	1,093	-1	논현동 769-5	211
-2	논현동 769-4			223	RC3-1, RC3-3 중 1개 획지와 공동개발권장	
-3	논현동 769-3			225	RC3-2, RC3-4 중 1개 획지와 공동개발권장	
-4	논현동 769-2			223	RC3-3, RC3-5 중 1개 획지와 공동개발권장	
-5	논현동 769-1			211	RC3-4와 공동개발 권장	
RC4	2,229	-1	논현동 770-7	219	RC4-2, RC4-6 중 1개 획지와 공동개발권장	
		-2	논현동 770-8	225	RC4-1, RC4-3, RC4-7 중 1개 획지와 공동개발권장	
		-3	논현동 770-9	225	RC4-2, RC4-4, RC4-8 중 1개 획지와 공동개발권장	
		-4	논현동 770-10	226	RC4-3, RC4-5, RC4-9 중 1개 획지와 공동개발권장	
		-5	논현동 770-1	219	RC4-4, RC4-10 중 1개 획지와 공동개발권장	
		-6	논현동 770-6	219	RC4-1, RC4-7 중 1개 획지와 공동개발권장	
		-7	논현동 770-5	226	RC4-2, RC4-6, RC4-8 중 1개 획지와 공동개발권장	
		-8	논현동 770-4	226	RC4-3, RC4-7, RC4-9 중 1개 획지와 공동개발권장	
		-9	논현동 770-3	225	RC4-4, RC4-8, RC4-10 중 1개 획지와 공동개발권장	
		-10	논현동 770-2	219	RC4-5,RC4-9 중 1개 획지와 공동개발권장	

가구 번호	도면 번호	면적 (㎡)	획 지		면적(㎡)	비 고
			번 호	위 치		
RC5	3,445	-1		논현동 771-9	242	RC5-2, RC5-8 중 1개 획지와 공동개발권장
		-2		논현동 771-10	248	RC5-1, RC5-3, RC5-9 중 1개 획지와 공동개발권장
		-3		논현동 771-11	248	RC5-2, RC5-4, RC5-10 중 1개 획지와 공동개발권장
		-4		논현동 771-12	248	RC5-3, RC5-5, RC-11 중 1개 획지와 공동개발권장
		-5		논현동 771-13	248	RC5-4, RC5-6, RC-12 중 1개 획지와 공동개발권장
		-6		논현동 771-14	248	RC5-5, RC5-7, RC-13 중 1개 획지와 공동개발권장
		-7		논현동 771-1	241	RC5-6, RC5-14 중 1개 획지와 공동개발권장
		-8		논현동 771-8	241	RC5-1, RC5-9 중 1개 획지와 공동개발권장
		-9		논현동 771-7	248	RC5-2, RC5-8, RC5-10 중 1개 획지와 공동개발권장
		-10		논현동 771-6	248	RC5-3, RC5-9, RC5-11 중 1개 획지와 공동개발권장
		-11		논현동 771-5	248	RC5-4, RC5-10, RC5-12 중 1개 획지와 공동개발권장
		-12		논현동 771-4	248	RC5-5, RC5-11, RC5-13 중 1개 획지와 공동개발권장
		-13		논현동 771-3	248	RC5-6, RC5-12, RC5-14 중 1개 획지와 공동개발권장
		-14		논현동 771-2	241	RC5-7, RC5-13 중 1개 획지와 공동개발권장
RC6	1,797	-1		논현동 754-1	819	RC6-2와 공동개발권장
		-2		논현동 754-2	978	RC6-1와 공동개발권장
RC7	3,849	-1		논현동 753-1	997	RC7-2, RC7-3 중 1개 획지 또는 가구단위 공동개발권장
		-2		논현동 753-4	962	RC7-1, RC7-4 중 1개 획지 또는 가구단위 공동개발권장
		-3		논현동 753-2	927	RC7-1, RC7-4 중 1개 획지 또는 가구단위 공동개발권장
		-4		논현동 753-3	963	RC7-2, RC7-3 중 1개 획지 또는 가구단위 공동개발권장
RC8	2,595	-1		논현동 752-1	864	RC8-2와 공동개발권장
		-2		논현동 752-2	883	RC8-1, RC8-3 중 1개 획지와 공동개발권장
		-3		논현동 752-3	848	RC8-2와 공동개발권장
RC11	2,990	-1		논현동 744-1	979	RC11-2와 공동개발권장
		-2		논현동 744-2	1,006	RC11-1, RC11-3 중 1개 획지와 공동개발권장
		-3		논현동 744-3	1,005	RC11-2와 공동개발권장
RC12	4,845	-1		논현동 743-1	2,013	RC12-2와 공동개발권장
		-2		논현동 743-2	2,832	RC12-1과 공동개발권장

가구 번호	도면 번호	면적 (㎡)	획 지		면적(㎡)	비 고
			번 호	위 치		
RC13	3,879	-1	논현동 741-1	1,909	RC13-2와 공동개발권장	
		-2	논현동 741-2	1,970	RC13-1와 공동개발권장	
RC14	1,878	-1	논현동 772-8	224	RC14-2와 공동개발권장	
		-2	논현동 772-7	237	RC14-1, RC14-3 중 1개 공동개발권장	
		-3	논현동 772-6	236	RC14-2, RC14-4 중 1개 공동개발권장	
		-4	논현동 772-5	236	RC14-3, RC14-5 중 1개 공동개발권장	
		-5	논현동 772-4	236	RC14-4, RC14-6 중 1개 공동개발권장	
		-6	논현동 772-3	236	RC14-5, RC14-7 중 1개 공동개발권장	
		-7	논현동 772-2	236	RC14-6, RC14-8 중 1개 공동개발권장	
		-8	논현동 772-1	237	RC14-7과 공동개발권장	
총 계		-		38,677	-	

마) 일반상업용지 (변경 없음)

○ 일반상업용지 결정계획

가구 번호	도면 번호	면적 (㎡)	획 지		면적(㎡)	비 고
			번 호	위 치		
C1		7,955	-	논현동 747-1	7,955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C2	4,235	-1		논현동 746-4	1,417	C2-2와 공동개발권장
		-2		논현동 746-5	1,400	C2-1, C2-3 중 1개 획지와 공동개발권장
		-3		논현동 746-6	1,418	C2-2와 공동개발권장
C3	4,140	-1		논현동 746-1	1,380	C3-2와 공동개발권장
		-2		논현동 746-2	1,380	C3-1, C3-3 중 1개 획지와 공동개발권장
		-3		논현동 746-3	1,380	C3-2와 공동개발권장
C8	6,840	-1		논현동 751-2	3,473	C8-2와 공동개발권장
		-2		논현동 751-3	3,367	C8-1와 공동개발권장
C10		18,940	-	논현동 751-1	18,940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총 계		-		42,110	-	

바) 공공시설용지 (변경)

○ 공공시설용지 결정계획 (변경)

가구 번호	도면 번호	면적 (㎡)	획 지		면적(㎡)	비 고
			번 호	위 치		
공1 ~ 공5, 공7	6,907	6,907	공1	논현동 766-2	1,907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공2	논현동 773-2	967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공3	논현동 744-4	1,735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공4	논현동 739-2	684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공5	논현동 739-3	1,109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공7	논현동 756-3	505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주1 ~ 주7	21,761.5	21,761.5	주1	논현동 773-3	1,444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주2	논현동 754-4	4,280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주3	논현동 754-3	3,718.5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광1과 중복결정)
			주4	논현동 750-2	2,581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주5	논현동 749-3	5,162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주6	논현동 744-5	1,305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주7	논현동 742-1	3,159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초1 ~ 고3	105,443	105,443	초1	논현동 767-3	10,197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초2	논현동 774-2	10,147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초3	논현동 755-2	10,484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초4	논현동 738-5	10,990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중1	논현동 765-2	11,461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중2	논현동 755-3	11,201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고1	논현동 762-1	12,857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고2	논현동 767-2	15,394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고3	논현동 738-4	12,712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유1 ~ 유3	4,126	4,126	유1	논현동 766-3	1,045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유2	논현동 774-3	1,098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유3	논현동 738-3	1,983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문1 ~ 문2	19,336	19,336	문1	논현동 738-1	8,431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문2	논현동 767-4	10,905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광1 ~ 광2	11,728.5	11,728.5	광1	논현동 754-3	3,718.5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주3과 중복결정)
			광2	논현동 750-1	8,010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도1	1,933	1,933	도1	논현동 739-4	1,933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연1 ~ 연2	6,584	6,584	연1	논현동 762-2	3,080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연2	논현동 767-5	3,504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가구 번호	도면 번호	면적 (㎡)	획 지		면적(㎡)	비 고
			번 호	위 치		
완1 ~ 완19	54,632	54,632	완1	논현동 760-8	2,653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완2	논현동 759-9	2,502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완3	논현동 773-5	2,245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완4	논현동 774-5	3,734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완5	논현동 755-8	3,458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완6	논현동 750-3	3,461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완7	논현동 749-2	584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완8	논현동 749-4	8,447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완9	논현동 755-6	6,278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완10	논현동 740-5	5,912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완11	논현동 756-6	5,005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완12	논현동 739-6	2,471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완13	논현동 757-3	4,473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완14	논현동 751-5	783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완15	논현동 751-4	1,027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완16	논현동 747-2	429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완17	논현동 745	293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완18	논현동 748	453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완19	논현동 747-3	424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근1 ~ 근4	825,145	825,145	근1	논현동 738-8	561,641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근2	논현동 756-5	34,712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근3	논현동 755-7	10,633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근4	논현동 763-2	216,492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고잔공원	141,092	141,092	고잔공원	고잔동 983	141,092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소1	6,446	6,446	소1	논현동 751-6	6,446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어1 ~ 어8	21,506	21,506	어1	논현동 765-4	1,517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어2	논현동 757-2	1,923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어3	논현동 773-4	1,513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어4	논현동 774-4	1,591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어5	논현동 755-5	1,689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어6	논현동 749-5	3,231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어7	논현동 740-3	1,531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어8	논현동 739-5	8,511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가구 번호	도면 번호	면적 (㎡)	획 지		면적(㎡)	비 고
			번 호	위 치		
의1		14,721	의1	논현동 767-1	14,721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오1		1,165	오1	논현동 756-2	1,165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쓰1		1,603	쓰1	논현동 738-7	1,603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사1		1,777	사1	논현동 738-8	1,777	제1호 근린공원 내 중복결정

사) 기타시설용지 (변경 없음)

○ 기타시설용지 결정계획

가구 번호	도면 번호	면적 (㎡)	획 지		면적(㎡)	비 고
			번 호	위 치		
종1 ~ 종3	4,738	4,738	종1	논현동 765-3	1,624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종2	논현동 738-6	1,980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종3	논현동 738-2	1,116	필지분할 및 합병불가
유보지	10,777	유보지	유보지	논현동 764-4	10,777	-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 조서 (변경)

가) 단독주택용지 (변경 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R1 ~ R4	R1 ~ R4	용 도	허용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 단, 지하층 주거용도는 불허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건축물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 이	○ 3층 이하		
		배 치	○ 계획설명서 기준참조		
		형 태	○ 경사지붕 (권장)		
		색 채	○ 계획설명서 색채계획 기준참조		
		건축선	○ 건축한계선 : 1.0m		

나) 연립주택용지 (변경 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A2, A8	A2, A8	용 도	허용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나목의 연립주택 ※ 단, 지하층 주거용도는 불허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건축물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 이	○ 4층 이하		
		배 치	○ 계획설명서 기준참조		
		형 태	○ 경사지붕 또는 옥상조경을 처리한 평지붕(권장)		
		색 채	○ 계획설명서 색채계획 기준참조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도로변 3.0m, 인접대지경계선 1.5m		

다) 공동주택용지 (변경 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A1 A3 A4 A5 A6 A7 A9 A10 A11 A12	A1 A3 A4 A5 A6 A7 A9 A10 A11 A12	용 도	허용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가목의 아파트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건축물	
		건폐율	○ 25%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A4 : 180%이하)		
		높 이	-		
		배 치	○ 탑상형배치 (권장) (결정도 참조)		
		형 태	○ 경사지붕 또는 파라펫이나 장식물 처리한 평지붕 (권장)		
		색 채	○ 계획설명서 색채계획 기준참조		
		건축선	○ 건축한계선 : 6.0m		

라) 근린생활용지 (변경 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RC1 ~ RC8, RC11 ~ RC14	RC1 ~ RC8, RC11 ~ RC14	용 도	지정 용도	○ RC2-5, RC14 : 주거용도 건축물(최고층 1개층에 한함)	
			허용 용도	○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제36조 준주거 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불허용도 이외의 건축물	
			권장 용도	○ 학원 (단,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 RC11에 한함	
			불허 용도	○ 학교보건법상 상대정화구역 내 금지되는 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조업소, 수리점,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창고시설, 공장, 숙박시설, 주거용도 건축물 (단, RC1, RC6-8, RC11-13에 한함)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RC2-5, RC14 :200% 이하)		
		높 이	○ 최저층수 : 3층 이상 (RC2-5, RC14 :최고층수 4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계획설명서 색채계획 기준참조		
		건축선	○ 건축한계선 : 2.0m		

마) 일반상업용지 (변경 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C1 ~ C3, C8, C10	C1 ~ C3, C8, C10	용 도	허용 용도	○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제38조 일반상업지역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불허 용도	○ 격리병원, 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숙박시설, 주거용도 건축물 (단, C2, C3, C8에 한함)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800% 이하		
		높 이	○ 최저층수 : 5층 이상		
		배 치	-		
		형 태	○ 계획설명서 기준참조		
		색 채	○ 계획설명서 색채계획 기준참조		
		건축선	○ 건축한계선 : 3.0m		

바) 공공시설용지 (변경)

○ 공공청사 (변경 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공1 ~ 공5 공7	공1 ~ 공5 공7	용 도	지정 용도	○ 공1 : 공공청사 ○ 공2 : 우체국 ○ 공3 : 동청사 ○ 공4 : 파출소 ○ 공5 : 소방서 ○ 공7 : 공동구관리사무소	
			불허 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건축물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공1, 공2 : 250% / 공3 : 350% / 공4, 공5, 공7 : 200%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계획설명서 색채계획 기준참조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도로변 3.0m, 인접대지경계선 1.5m ○ 단, 공공청사 7용지 건축한계선 : 1.5m		

○ 도서관 (변경 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도1	도1	용 도	지정 용도	○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및 같은 조 제7호 에 따른 전문도서관	
			불허 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건축물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계획설명서 색채계획 기준참조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도로변 3.0m, 인접대지경계선 1.5m		

○ 주차장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주1 주2 주3 주6	주1 주2 주3 주6	용 도	지정 용도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에 한함	
			불허 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주4 주5 주7	주4 주5 주7	용 도	허용 용도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에 한함	
			불허 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90% 이하		
		용적률	○ 450% 이하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계획설명서 색채계획 기준참조		
		건축선	-		

○ 학교시설 (변경 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초1 ~ 고3	초1 ~ 고3	용 도	허용 용도	○ 초·중등교육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건축물	
		건폐율	○ 4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계획설명서 색채계획 기준참조		
		건축선	-		

○ 문화시설 (변경 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문1 ~ 문2	문1 ~ 문2	용 도	허용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건축물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80% 이하		
		높 이	○ 4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계획설명서 색채계획 기준참조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도로변 3.0m, 인접대지경계선 1.5m		

○ 유치원 (변경 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유1 ~ 유3	유1 ~ 유3	용 도	허용 용도	○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설립·운영규정에 의한 유치원 및 그 부속용도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건축물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유3 : 200% 이하)		
		높 이	-		
		배 치	-		
		형 태	○ 계획설명서 참조		
		색 채	○ 계획설명서 색채계획 기준참조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도로변 3.0m, 인접대지경계선 1.5m		

○ 오수중계펌프장 (변경 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오1	오1	용 도	지정 용도	○ 지정용도 및 그 부대시설	
			불허 용도	○ 지정용도 및 그 부대시설 이외의 건축물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80% 이하		
		높 이	○ 4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 쓰레기자동집하장 (변경 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쓰1	쓰1	용 도	지정 용도	○ 지정용도 및 그 부대시설	
			불허 용도	○ 지정용도 및 그 부대시설 이외의 건축물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80% 이하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 의료시설 (변경 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의1	의1	용 도	지정 용도	○ 지정용도 및 그 부대시설	
			불허 용도	○ 지정용도 및 그 부대시설 이외의 건축물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높 이	-		
		배 치	○ 계획설명서 참조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3.0m		

○ 사회복지시설 (변경 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사1	사1	용 도	지정 용도	○ 지정용도 및 그 부대시설	
			불허 용도	○ 지정용도 및 그 부대시설 이외의 건축물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80% 이하		
		높 이	○ 4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사) 기타시설용지 (변경 없음)

○ 종교시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종1 ~ 종3	종1 ~ 종3	용 도	허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4호에 해당하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의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과 6호에 해당하는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납골당 제외)	
			불허 용도	○ 허용용도외의 건축물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 이	-		
		배 치	-		
		형 태	○ 계획설명서 참조		
		색 채	○ 계획설명서 색채계획 기준참조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도로변 3.0m, 인접대지경계선 1.5m		

○ 유보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종1 ~ 종3	종1 ~ 종3	용 도	허용 용도	○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제36조 준주거지역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불허 용도	○ 허용용도외의 건축물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 (변경)

가) 단독주택용지 (변경 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R1 ~ R4	R1 ~ R4	주차장 설치기준	○ 주차장법 및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적합하게 설치 하여야 함	
		주차장 구조 및 배치	○ 모든 건물의 부설주차장은 지상주차장을 원칙으로 하고 기계식 주차방식을 금지 ○ 옥내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주차구획과 건물내벽 사이에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	
		차량 출입구	○ 차량출입구가 지정되지 않은 필지는 차량출입구간 이외의 구간 에서 자유롭게 차량출입구를 설치하되 둘이상의 도로에 접할 경우 접한 폭이 넓은 도로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나) 연립주택용지 및 공동주택용지 (변경 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A1 ~ A12	A1 ~ A12	차량 출입구	○ 차량출입구는 교통영향평가상의 출입구 지정 사항 및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구간도 준수하여야함	
		주차장	○ 주차장법 및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적합하게 설치 하여야 함 ○ 연립주택용지는 가급적 지하주차장으로 하고 지상부에 설치시에는 바닥포장을 친환경 재료를 사용할 것을 권장함 ○ 공동주택용지 중 60㎡이상인 블록은 비상용, 장애인용, 화물차량을 제외한 95%이상을 지하주차장(데크주차장 포함)으로 계획을 하여야함 ○ 공동주택용지 중 60㎡미만인 블록은 비상용, 장애인용, 화물차량 을 제외한 70%이상을 지하주차장으로 계획을 하여야함	
		단지내 도로	○ 단지내 주도로는 결정도에서 지정한 단지내 차량동선을 따라 설치할 것을 권장함	
		단지내 보행자 통로	○ 결정도에서 단지내 보행동선이 지정된 주택단지는 그 위치에 단지내 보행자통로를 설치하도록 권장함 ○ 단지내 보행동선이 지정되지 않은 주택단지는 자유롭게 보행자 통로를 조성하되 버스정류소, 공원, 보행자전용도로, 학교 및 유치원 시설 등 보행유발요소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치되도록 함	
		전면공지	○ 연립주택용지 및 공동주택용지내 보행자 전용도로변이 접하고 있는 건축 한계선 부분 중 보행자 전용도로변에 전면공지를 지정하고 단지내 옥외공간으로 조성하고 건축물을 배치하여서는 아니됨	

다)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 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RC1 ~ RC8, RC11 ~ RC14	RC1 ~ RC8, RC11 ~ RC14	주차장	○ 주차장법 및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적합하게 설치 하여야함	
		차량 출입구	○ 차량진출입은 원칙적으로 위계가 낮은 도로와 접도폭이 넓은 곳 에서 설치하도록 함	
		전면공지	○ 건축선 후퇴로 생기는 전면공지에는 주차 및 담장을 설치할 수 없고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보행에 지장이 없게 인접보도의 높이와 일치되게 조성 ○ 포장의 재료 및 색채는 가급적 전면보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며 미관을 아름답게 하고 재질은 내구성이 뛰어난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며, 전면보도와 높이차를 두지 않음	

라) 일반상업용지 (변경 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C1 ~ C3, C8, C10	C1 ~ C3, C8, C10	주차장	○ 주차장법 및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적합하게 설치 하여야함	
		차량 출입구	○ 차량출입은 원칙적으로 위계가 낮은 도로와 접도폭이 넓은 곳에서 설치하도록 함 ○ 지상에 설치되는 주차장의 경우 이용의 편리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계식 주차설치를 억제 ○ 상업용지내 부설주차장에는 부설주차장주차대수의 1%내지 3%의 범위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장애인전용주차장으로 구분 설치하도록 함	
		전면공지	○ 건축선 후퇴로 생기는 전면공지에는 주차 및 담장을 설치할 수 없고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보행에 지장이 없게 인접보도의 높이와 일치되게 조성 ○ 포장의 재료 및 색채는 가급적 전면보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며 미관을 아름답게 하고 재질은 내구성이 뛰어난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며, 전면보도와 높이차를 두지않음	
		기 타	○ 상업용지에 건축허가 신청필지는 건축위원회 건축심의를 거쳐야함	

마) 공공시설용지 (변경)

○ 학교시설, 우수중계펌프장, 쓰레기자동집하장 (변경 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초1 ~ 고3, 오1, 쓰1	초1 ~ 고3, 오1, 쓰1	차량 출입구	○ 교통영향평가상 심의 의결된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된 위치에 서는 차량의 출입을 하여서는 아니됨	
		주차장	○ 주차장법 및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결 내용 준수	

○ 공공청사, 유치원, 문화시설, 의료시설 (변경 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공1 ~ 공5, 공7, 도1, 유1 ~ 유3, 문1, 문2, 의1	공1 ~ 공5, 공7, 도1, 유1 ~ 유3, 문1, 문2, 의1	차량 출입구	○ 교통영향평가상 심의 의결된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된 위치에 서는 차량의 출입을 하여서는 아니됨	
		주차장	○ 주차장법 및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결 내용 준수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발생된 전면공지는 보도 및 조경으로 조성하고 보행자가 24시간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함 ○ 전면공지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를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적지하여서는 아니됨 ○ 포장의 재료 및 색채는 가급적 전면보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며 미관을 아름답게 하고 재질은 내구성이 뛰어난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며, 전면보도와 높이차를 두지 않음	

○ 주차장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주1~주7	주1~주7	주차장	○ 주차장용지에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 부대시설이용을 위한 주차공간을 구분되게 설치하여야 함	

바) 기타시설용지 (변경 없음)

○ 종교시설, 유보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주차장	○ 주차장법 및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함	
종1 ~ 종3, 유보지	종1 ~ 종3, 유보지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발생된 전면공지는 보도 및 조경으로 조성하고 보행자가 24시간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함 ○ 전면공지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를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적지하여서는 아니됨 ○ 포장의 재료 및 색채는 가급적 전면보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며 미관을 아름답게 하고 재질은 내구성이 뛰어난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며, 전면보도와 높이차를 두지 않음	

사) 용적률 인센티브(단, 근린생활시설용지, 상업용지에 한함)(변경없음)

구 분		완 화 조 건	완 화 용 적 륜(%)	비 고
용도	권장용도	권장용도 준수시	20%	총연면적 20%이상시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쌓지공원	조성시	용적률× (추가조성면적÷대지면적)× α	피로티구조 : $\alpha = 1.0$ 지상형구조 : $\alpha = 2.0$ 침상형구조 : $\alpha = 3.0$ 단, 의무면적 이외 추가조성시
환경 친화적	투수성 바닥처리	투수성재료로 조성시	용적률× (조성면적÷대지면적)×0.5	
	중수도	중수도시스템 설치시	20%	빗물이용시설 제외
	옥상녹화	옥상부 녹화시	용적률× (조성면적÷옥상면적)×0.2	
	벽면녹화	벽면녹화 조성시	용적률× (조성면적÷전체벽면면적)× 0.5	

주1)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인센티브는 인천시조례에서 정한 용적률을 넘을 수 없음(준주거 : 500%, 일반상업 : 1,000%)

IV.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 고시 제2019-2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아래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청문실시)통지 하였으나 폐문 등으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청문실시)통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 9. 20.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보 건 소 장

-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소 폐쇄에 따른 청문 실시
- 공고기간 : 2019. 9. 20. ~ 2019. 10. 04.
- 당 사 자

업종	신고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 재 지	비고
일반음식점	2010-019972	신장충동왕족발	권○자	인천시 부평구 북평북로 110-7, 가동 102호(청천동, 삼풍빌라)	-
일반음식점	2016-0199172	참다운	한○식	인천시 미추홀구 302번길 13(도화동, 삼원연립)	
일반음식점	2014-0199428	구어바베큐치킨	정○희	경기도 시흥시 수인로 3409번길 54, 7동 514호(신천동, 동진아파트)	

- 처분내용 : 영업소 폐쇄
- 사 유 : 영업시설물 전부 멸실
-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 청문내역
 - 기 관 명 :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식품안전팀(032-453-2637)
 - 청문일시 : 2019. 10. 11.(금) 10:00부터 11:00까지(1시간)
 - 청문장소 : 남동구보건소 4층 식품위생과
 - 청문주제자: 남동구 식품위생과 공중위생팀장

8. 청문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4)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가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실 수 없습니다.
- (5)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 식품안전팀 032-453-263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